

자료논문 || 99-05 OECD 연구보고서 ❶

OECD 부패방지협약과 후속이행조치에 관한 논의와 평가

張 槿 鎬

1999. 5

국문요약

지난 1997년 12월 OECD 회원국 등 34개국은 외국 공직자에 대한 뇌물제 공행위를 불법화하는 부패방지협약에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지난 1999년 1월 4일 해외뇌물거래방지법을 제정한 바 있다.

동 협약의 주요 내용은 외국 공직자 등에게 사업상의 이익을 위하여 뇌물을 직·간접적으로 제공 내지 교사하는 자를 형사처벌하고 범인에게도 벌금형을 포함한 제재를 가한다는 것이다. 또한 각 당사국은 부패방지차원에서 뇌물을 손금불산입하고 기업회계 및 감사기준을 강화해야 하며, 효과적인 법시행을 위하여 관할권 확립과 범인인도 등 상호법률지원도 수행해야 한다.

이 밖에도 부패방지법의 실질적 이행과 기능적 동등성을 위하여 CIME 산하 실무 작업반은 각국의 이행조치에 대한 감독·평가를 수행하고 후속조치에 관한 권고를 OECD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실무작업반은 동 협약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직후보자와 정당(인)을 공직자에 포함하는 문제, 자금세탁법과의 연계 그리고 해외자회사 및 역외센터를 이용한 범법행위를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밖에도 CFA 등 OECD 각 위원회는 뇌물교사와 기업 간의 비리방지, 세무조사의 기준 설정과 자동적 정보교류의 확대를 논의중이다.

부패방지협약은 자국 기업에 대한 동등한 경쟁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미국 등의 노력으로 시작하였다. 그런데 금융시장을 비롯한 각종 재화시장의 통합으로 국지적 위기가 세계시장에 심각한 파급효과를 유발하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WTO 등을 통한 '시장의 국제화'와 함께 OECD와 IMF 등의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도의 국제화'를 달성하려는 선진국의 노력은 한층 더 강화되고 있다.

OECD에 따르면 부패로 인한 경쟁조건의 왜곡은 건전한 정부운영과 경제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제한된 경쟁은 특히 국제무역 및 투자의 감소를 유발하고 장기적으로는 지대추구로 인하여 금융위기와 같은 시장붕괴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다만 경제행위와 제도가 일정 수준 경제발전단계에 종속될 수밖에 없으므로 급격한 제도개혁은 개도국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편 국제투명성사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부패도는 1998년 당시 85개국 중 43위에 이르고 수출확대를 위하여 뇌물을 제공하는 관행이 심한 국가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부패에 둔감한 사회분위기로 인하여 금융실명제와 자금세탁방지법 등과 같은 비리예방 및 처벌을 위한 제도개혁이 불완전하다는 사실이다. 반면 대외적으로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투자시장이 국제적으로 통합되면서 재화의 흐름을 뒷받침하는 체제의 효율성이 경제성장의 주요 결정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정부운영을 포함한 체제의 효율성은 궁극적으로 체제의 건전성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제도의 국제화를 긍정적으로 이용한 체제개혁이 단행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부패가 상당 부분 불합리한 제도에서 발생하므로 보수와 행정조직의 개혁 등 건전한 정부운영이 선행되고 연후 정치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로서 금융실명제와 자금세탁방지법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기업의 자발적 이행과 비리예방을 위하여 IMF와 OECD 등이 추진중인 투명한 회계기준과 객관적인 금융감독체제 등이 도입되어야 한다.

목 차

I. OECD 부패방지협약의 배경과 체결과정	9
1. 배경	9
2. 체결과정	10
II. OECD 부패방지협약의 주요 내용	12
1. 뇌물공여죄의 정의	12
2. 뇌물공여죄의 대상	14
3. 제재조치와 법인의 의무	15
4. 관할권과 범인인도	16
5. 협약이행을 위한 제반 조치	19
6. 협약개정과 가입 및 탈퇴	23
7. 1997년 개정 권고안의 추가 내용	23
III. OECD 실무작업반에서의 논의	25
1. 후속절차 규정	25
2. 향후 쟁점사항	26
3. 뇌물제공 교사(solicitation)에 대한 제재	34
IV. 부패방지협약과 조세상의 규제조치	35
1. 논의 배경	36

2. 뇌물공여에 대한 손금불산입	36
3. OECD 세무조사 가이드라인	41
4. 세무관련 정보교류	42
 V. OECD 부패방지협약의 평가	46
1. 부패방지의 필요성과 의의	46
2. 부패방지협약의 문제점	47
3. 우리나라 해외뇌물거래방지법의 문제점	52
 VI. 우리 경제에 대한 시사점	54
1. 우리 경제가 처한 현황	54
2. 외부환경과 정책방향	56
 VII. 결론	59
 참고문헌	63
 부록 1. 공공부문에서의 부패방지 조치	66
2. 海外賂物去來防止法	67
 Executive Summary	70

표목차

<표 1> 외국 공무원에게 제공한 뇌물의 손금불산입에 대한 OECD회원국의 제도	38
<표 2> 외국 공무원에게 제공한 뇌물의 OECD회원국 손금불산입 규정 ..	40
<표 3> 세무당국이 보유한 뇌물관련 정보의 사법기관과의 공유에 대한 OECD회원국의 제도	43
<표 4> 한국의 청렴도 지수(CPI)	55

I. OECD 부패방지협약의 배경과 체결과정

1. 배경

- OECD 회원국 등 34개국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공무원에 대한 뇌물 수수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1997년 12월 17일, 부패방지협약¹⁾과 그 주해에 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약의 확산과 충실한 이행을 위한 감시체제의 도입에 공동 합의함.²⁾
 - 동 협약은 미국을 위시한 일본·독일·영국 그리고 캐나다가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1999년 2월 15일 발효됨.³⁾
 -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9년 1월 4일 “해외뇌물거래방지법”이 특별법으로 제정되었음.
- 지난 1977년 미국이 해외부패방지법(FCPA: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을 제정하여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를 불법화한 이래, 최근 각종 국제기구에서 미국의 주도하에 부패방지를 위한 원칙설정과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EU에서는 1994년 말타 법무상 회의 이래 비리방지를 위한 일련의

1) 부패방지협약의 공식 명칭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직자에 대한 뇌물공여방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임.

2) OECD 회원국(29개국) 이외 동 협약에 서명한 비회원국은 5개국으로 아르헨티나, 브라질, 불가리아, 칠레, 슬로바키아공화국임.

3) 동 협약이 발효되려면 OECD 상위 10대 수출국 중 5개국이 비준하고 이들 국가의 수출비중이 상위 10개국 중 60%를 상회하여야 함(협약 제15조).

조치로서 1998년 12월 “EC 공직자 및 EU 회원국 공직자의 부패방지협약”을 채택하였으며,⁴⁾

- 이 밖에도 “부패방지 및 EC 재정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과 부패방지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전세계적인, 여러 분야에서 포괄적인’ 부패방지조치를 개발·검토중임.⁵⁾

- 한편, 1996년 WTO 싱가포르 각료이사회에서는 정부조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작업반 설치에 합의하였고, 1999년 11월 개최 예정인 New Round에서 정부 조달계획의 공표와 규정의 투명화 등에 관한 다자간 협정을 논의할 예정임.

- 이 밖에도 미주기구(OAS)는 1996년 뇌물행위에 대한 형사상 처벌을 명문화한 “반부패 미주국가간 협정”을 체결하였고,
- IMF와 IBRD에서는 원조성 자금 제공에 있어서 건전한 국가경영(Good Governance)을 지원하고 또한 금융제도를 포함한 각종 제도개선을 연구·검토하기로 함.⁶⁾

2. 체결과정

- 이러한 배경하에 OECD 이사회는 부패척결을 위한 국제적 공조를 선

4) Convention on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involving official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or officials of Member States of European Union.

5)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Communities' financial interests, the programme of Action Against Corruption(1996).

6) IMF는 1997년 ‘공적 자원의 관리에 있어서 부패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행정적 체계의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을 요청한 바 있음(IMF Guidance Note of August 1997). Experimental Case Studies on Transparency Practices(IMF, 1999. 4) 참조. 이 밖에도 소련과 흑해경제협력기구(BSEC)에 속한 구동구권 11개 국가는 1998년 10월 OECD와의 공조하에 “부패방지를 위한 비공식 네트워크”를 조직함.

도하여 지난 1994년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뇌물제공에 대한 권고”를 채택하였음.

- 그 후 1996년 4월, 산하 재정위원회(CFA)가 제안한 “뇌물의 손금 불산입에 대한 권고”를 가결하고,
- 1997년 5월에는 “개정권고”를 채택하여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을 형사처벌하기 위한 국제협상을 즉시 개시토록 결정함.⁷⁾

- 그 결과, 구체적인 협약이 지난 1997년 12월에 체결되었음.⁸⁾

- 특히 국제투자 및 다국적 기업위원회(CIME)와 CIME 산하 국제상거래 뇌물 실무작업반⁹⁾은 각국의 이행조치에 대한 감독과 함께 후속조치에 관한 논의를 책임지고,
- 이외 뇌물의 손금불산입 등 구체적인 이행방안은 사안에 따라 해당 위원회인 재정위원회(CFA) 등이 검토하기로 함.

- 한편, OECD 이사회는 1998년 4월 “공직 서비스 윤리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채택하였음.¹⁰⁾

- 실무작업반은 국제상공회의소와 함께 사기업 간의 뇌물행위에 대한 연구·검토를 진행하고
- CFA는 금융거래의 정보교환과 세무감사 기준에 대한 검토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7) C(94)75/FINAL 1994, C/M(96)8/PROV, 1996, C(97)123/FINAL, 1997.

8) 협약(Convention)과 권고안(Recommendation)의 차이는 전자가 형법에 대한 구속력이 있는 구체적인 약속인 반면 후자는 좀더 넓은 범주내의 일반적인 내용을 포함함.

9) Working Group on Bribery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10) Recommendation on Improving Ethical Conduct in Public Service. 또한 EU는 1999년에 공직자 처신에 대한 유럽모델조항(European Model Code of Conduct for Public Officials)을 채택할 예정임.

II. OECD 부패방지협약의 주요 내용

1. 뇌물공여죄의 정의

- 동 협약에서 각국의 법률체제하에서 형사범죄로 처벌되는 뇌물공여의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음.
 - ① 국제상거래에서 ② 사업상의 또는 기타 부당한 이익을 획득(보유)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③ 외국공직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공무수행과 관련된 행위를 행하거나 행하지 않게 하려는 목적으로 ④ 직접 또는 중개자를 통하여 '부당한' 금전상의 이익 또는 기타 이익을 외국공직자나 제3자를 위하여 당해 공직자에게 제의, 약속 또는 제공하는 행위(제1조 1항).
 - 뇌물제공행위는 이익의 가치나 결과, 해당지역의 관습, 당국의 관용, 또는 거래를 위한 뇌물공여의 필요성과 관계없이 행위 자체로서 범법임.
- 기능적 동등성(functional equivalence)을 제외하면 각국은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해당범죄를 정의함에 있어서 제1조의 규정을 엄밀히 따를 필요가 없음(주해, Commentaries).
 - 즉, 체결국의 국내법이 동 조항의 정의에 따른 범죄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수준 이상의 증거를 요하지 않으면, 당해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일반법이나 특별법 등 다양한 접근방식이 활용될 수 있음.
- ※ 따라서 우리나라나 미국과 같이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영국처럼 일반적인 부패방지법(Prevention of Corrupt Act)을 확대·적용할 수 있으며 이 밖에도 스위스처럼 공정거래법으로 종업원, 대리인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자신들의 의무를 위반하

도록 중용하는 목적으로 금품이나 기타 수혜를 제공하는 것을 위법으로 규정할 수 있음.

- 예외적으로 당해국이 판례법(case law)을 포함한 성문법 또는 규정으로 이를 허용하거나 '편의'를 위하여 소규모로 제시 혹은 약속되는 금품제공(facilitation payment)은 범죄행위로 간주되지 않음.
 -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에 따르면 반복적인(routine) 행정업무 수행의 확보 또는 신속한 처리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된 급행료는 동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¹¹⁾
 - 또한, 외국 공무원이 속한 국가에서 뇌물의 합법성이 성문화되어 있거나 또는 여행 및 숙박비용과 같이 합리적이고 실제 지불된 비용은 긍정적 변호의 요건(affirmative defences)으로 사용될 수 있음.
 - 단, 상기 비용은 제품 등의 설명, 선전, 판매촉진 또는 외국 정부(기관)의 계약을 수행하는 데 직접 연관된 비용이어야 함.¹²⁾
- 한편, 제1조 2항은 외국공직자에 대한 뇌물공여를 선동·지원·교사하는 등의 공모행위나 그 위임을 형사범죄로 규정하고, 뇌물제공을 위한 시도나 모의도 자국내 공직자에 대한 뇌물죄와 같은 정도의 범죄로 간주하되, 구체적인 후속행위가 없는 선동·시도 또는 모의는 국내법의 통

11) FCPA, Sec. 78dd-2.(b)과 "Implementation of the Recommendation on Bribery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OECD Working Paper*, No. 34, 1996.

12)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법적으로 허용된 수혜의 제공 이외 부패방지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기타 수혜를 다음과 같이 자세히 규정함: (3) (b)개인과 외국 정부 사이의 계약과 관련된 공무 이행 또는 상품 등의 설명이나 판매촉진과 직접 관련하여 외국 공무원에 의하여 또는 대신하여 발생한 적정한 비용의 지불 (4) (a)허가, 면허, 서류의 발급 (b)비자 등 공적 서류의 발급 (c)전기, 우편, 통신 등 일반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공급 (d)경찰서비스, 화물적재, 부패물 처리, 화물운반 관련 검사 등 외국 공무원의 업무 가운데 관행적인(routine) 공무수행을 촉진하거나 보장받기 위한 급행료. 그러나 사업의 조건이나 신규사업의 수여 또는 사업을 계속하도록 허용하는 업무나 그러한 유인은 관행적 성격의 업무가 아님(Canada, Corruption of Foreign Public Officials Act Section 3, FCPA Sec. 78dd-2. (h) 참조).

상적 규정에 따라 처벌하기로 함.

※ 우리나라는 뇌물에 대한 예비·음모죄가 없으므로 당해 조항은 적용되지 않음.

- 공무수행의 범위와 관련하여 해당 공직자의 권한과 관련없이 그 직위를 이용하는 경우도 제재대상임(제1조 4항).
 - 예컨대 다른 공직자의 공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뇌물이 제공되는 경우도 형사처벌 대상임.

2. 뇌물공여죄의 대상

- 외국공무원은 입법, 사법, 행정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선출직과 임명직을 포함하며 외국을 위하여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자와 국제공공기구의 관리 또는 대리인도 적용대상임.
 - 공직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하에 약속 내지 제공된 이익도 범죄행위의 범주에 포함되는데 다만 적용범위나 대상 등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 추가적 검토를 수행하기로 함.
 - 일당체제 국가의 당료들과 같이 실질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개인도 공직자로 간주될 수 있음.
- 공기업은 법인형태와 관계없이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으로, 예컨대 50%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하였거나 주식결권 또는 임원의 과반수를 통제하는 경우임.
 - 단, 공기업이 특혜적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지 않고 사기업과 동등한 상업적 기반에서 운영되면 협약이 적용되지 않음.

3. 제재조치와 법인의 의무

- 처벌 수준은 균형잡힌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자국내 공직자 뇌물수수에 필적하는 범위여야 함(제3조 1항).
 - 자연인인 경우, 효과적인 상호 법률지원과 범인인도가 가능한 수준에서 자유가 박탈됨.
- 금전상으로는 제공된 뇌물 및 뇌물공여로 인하여 얻은 수익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재산을 적절한 한도내에서 압류 및 몰수하는 등의 제재조치가 가해져야 함.
 - 단, 이 항은 금전상 제재에 대한 적절한 범위의 설정을 배제하지 않고,
 - 각 당사국은 추가로 민사상 또는 행정상 제재조치를 가하는 문제를 고려함(주해, 제3조 4항).
- 각 당사국은 자국내 법률상 원칙에 의거, 법인의 책임을 설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하되, 법인에 대한 형사상 책임 적용이 어렵다면, 당사국은 재발방지차원에서 금전상 제재를 포함한 비형사적 처벌을 가하는 것을 보장해야 함(제2조 및 3조 2항).
- ※ 또한, 제3조 4항에 따라 법인에게 부과될 수 있는 추가적인 제재조치에는 몰수 등의 벌금 이외 ① 공적 이익 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② 정부조달 또는 기타 상업 활동에서 한시적 또는 영구적 자격박탈 ③ 법정관리대상 지정 ④ 범원명령에 의한 해산 등이 포함됨(주해).
- 우리나라의 경우 뇌물 공여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해외뇌물거래방지법, 부록 참조).
 - 만약 범죄행위로 인한 이익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상당한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제3조 ①).

- 법인을 포함한 법인이나 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동 법에 제정된 범죄행위에 제공된 뇌물은 몰수함(제5조).
-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및 기타 종업원 등이 그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공여죄를 범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이외에 법인에 대해서도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만약 범법에 따른 이익이 5억 원을 초과하면, 그 이익의 2배에 상당한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함(제3조 ③).
- 단, 범죄행위 방지를 위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나 감독'을 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부과하지 않음(제3조 ④).

4. 관할권과 범인인도

- 뇌물제공 행위에 대한 관할권은 속지주의와 속인주의가 동시에 적용됨.
 - 뇌물공여죄가 전부 또는 일부 자국 영토내에서 발생하면 각 당사국은 이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하며,
 -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자국민의 해외 뇌물죄에 대한 기소관할권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되, 관할권이 경합될 때에는 당사국들이 협의함(제4조).¹³⁾
- ※ 단, 이중범죄(dual criminality)는 비록 다른 형법체계에 있을지라도 해당 행위가 발생한 장소에서 불법일 경우, 그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간주됨.¹⁴⁾

13) EU 부패방지협약(CFCE)에서는 관할권의 경합시 각 당사국에서 자행된 뇌물의 규모, 관할권 행사의 우선 순위, 체포장소, 국적, 그리고 과거 기소사실 등을 참고하여 협의함(제9조).

14) 이중범죄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른 기소 등의 전제조건임. 따라서 국내 공무원에 대한 뇌물을 처벌하고 있는 국가내에서 뇌물제공이라는 범법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이중범죄의 요건이 성립하나 만약 그러한 범죄행위가 제3국에서 이루어진다면,

- 외국공직자에 대한 뇌물공여죄는 당사국들의 법률이나 범인인도협정에 따라 범인을 인도할 수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함.
 - 따라서 범인인도협정이 없는 국가로부터 인도요청이 있으면 이 협약이 그 법적 근거로 간주될 수 있음.¹⁵⁾
 - 각 당사국은 뇌물공여죄로 인하여 자국민을 인도 내지는 기소하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며,
 - 만약 범인인도 요청을 자국민이라는 이유로 거절한다면 해당국은 기소를 목적으로 자국내 관할당국에 이 사건을 위임하여야 함.¹⁶⁾
- 미국의 경우, 미국영토와 ‘관련된’(territorial nexus) 행위에 대하여 관할권을 행사함. 즉, 미국 우편제도나 州間(interstate) 또는 해외상거래 수단을 이용하여 뇌물제공과 관련된 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함.¹⁷⁾
 - 여기서 ‘수단(instrumentality)’이란 미국 은행, 전화나 팩스 등의 수단을 포함하며 ‘주간의 거래’는 미국 주간 그리고 외국과의 무역, 상업, 교통 그리고 통신을 의미함.
 - 또한 외국공무원 등에게 주어지는 뇌물임을 인지하고 있는 자에게 가치가 있는 물품의 전부나 일부를 제공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함

면 이중범죄의 요건이 만족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주해에서 이를 명확히 함.

- 15) 또한 해당 범죄에 대하여 자국민 인도를 위해서는 범인인도협정이 필요하지만 외국인을 인도하는 데는 이를 필요로 하지 않는 국가의 경우, 이 협약을 자국민 인도를 위한 법적 근거로 간주할 수 있음.
- 16) EU 부패방지협약도 이와 동일한 규정을 유지하고 있음. 또한 부패방지 및 재정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EU 협약에 따르면 회원국이 단지 범법행위의 재정적 성격(fiscal nature)을 이유로 범인인도를 거절할 수 없음.
- 17) 영국의 경우 속지주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기소시 이중범죄의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음. 그러나 범죄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영국 영토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한, 영국인이 해외에서 뇌물을 제공한 행위는 영국법에 따라 기소되지 않음(OECD Working Paper, No. 34).

(indirect corruption).¹⁸⁾

- 처벌대상인 내국인(domestic concern)은 미국의 시민, 영주권자 등이거나 또는 주요한(principal) 상업적 기반을 미국내에서 유지하거나 미국에서 조직된 기업임.
 - 한편, 상기 내국인이 외국에서 FCPA에 정의된 범법행위를 할 경우, 행위의 수단(instrumentality)과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함.
 - 확정판정이 내려지면 법인은 최대한 2백만 달러의 벌금, 자연인은 10만 달러 또는/그리고 5년 이하 징역형(고의적 위법시, wilful) 또는 1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 특히, 내국인을 대리한 직원, 주주 등 자연인에게 부과된 벌금은 내국인이 대신하여 지불할 수 없음.
- 또한 외국인이나 기업 또는 이들을 대리한 자가 미국내에서 그러한 범법행위를 할 수 없음(FCPA Sec. 78dd-3).
 -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이 미국에서 범법행위를 하면 비록 현재 한국에 거주하더라도 미국 정부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 미국민이나 미국기업을 대리한 우리나라 국민이 미국이 아닌 우리나라나 제3국에서 범법행위를 자행하면 미국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음.¹⁹⁾
- EU 부패방지협약 제7조에 따르면 EU에서는 국적과 관계없이 속지주

18) 여기서 '인지(knowing)'란 범법자가 범죄행위를 하고 있거나 그러한 행위가 거의 반드시 발생할 것(substantially certain to occur)이라고 인식하고 있는(aware) 경우와 확실한 믿음이 있는 경우로서 처벌하려면 당사자가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고 믿고 있지 않는 한 상당한 가능성(high probability)을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의 증빙으로 충분함(deliberate disregard or wilful blindness clause).

19) 벌금이나 형량은 내국인과 동일함.

의(territoriality principle)가 우선적으로 적용됨.

- 이외, 자국민이 외국에서 행한 범죄행위나 또는 자국 공무원에 대하여 외국인이 뇌물을 제공한 경우에 대해서도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음(personality principle).

5. 협약이행을 위한 제반 조치

가. 기소의 독립성

- 뇌물공여행위를 조사 및 기소하는 것은 각 당사국별로 적용 가능한 규칙과 원칙에 따르되, 국가경제 이익에 대한 고려, 다른 국가와의 (잠재적) 관계 또는 관련 자연인 혹은 법인의 신분에 의하여 영향받지 않아야 함(제5조).
 - 기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결정권은 전문성을 근거로 행사되고 정치적 영향력은 배제되어야 함.
 - 또한, 1997 개정권고안에 따라 뇌물제공의 협의에 대하여 소관 당국이 진지하게 조사하고 중앙정부는 효과적인 법시행을 위하여 충분한 재원을 지원하여야 함(권고안 부속서 제6항).
- 여하한의 출소기한법(Statue of Limitations)도 뇌물공여죄에 대한 조사와 기소에 필요한 적절한 기간을 허용하여야 함.

나. 자금세탁

- 자국 공직자에 대한 뇌물을 자금세탁방지법의 적용대상범죄로 간주하는 국가는 외국공직자에 대한 뇌물에 대해서도 그러한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관계없이 자금세탁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함(제7조).²⁰⁾

- 바꿔 말하면, 동 조항에 따라 뇌물제공행위가 자금세탁을 유발하는
범법행위로 간주된다면 외국공직자에게 지불된 자금을 관리하거나
숨기는 행위는 뇌물제공과 별도로 자금세탁법의 규제를 받을 수
있음.²¹⁾

- 한편, ‘자국 공직자에 대한 뇌물’은 포괄적(broad) 의미로서 사용되어
야 함.²²⁾

- 예컨대, 당사국이 자국 공직자의 능동적인(active) 뇌물제공 또는
수동적인(passive) 뇌물수수를 자금세탁 목적의 범죄로 간주하는
경우, 외국공직자에 대한 뇌물도 동일한 조건하에서 같은 성격의
범죄로 자금세탁법의 저촉을 받아야 함.
- 따라서 자국 공직자의 수동적 뇌물수수를 돈세탁 목적의 범죄로 간
주하는 경우, 동 조항은 뇌물에 제공된 돈의 세탁에도 동일한 법을
적용하여야 함.²³⁾

※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OECD국가는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 조치를
취하거나 금융상의 기밀조항을 완화한 바 있음.²⁴⁾

20) 유럽이사회(Council of Europe)는 FATF 권고안 제4조에 제시된 바와 동일하게
마약관련 범죄 이외 ‘심각한’ 범법행위로 습득한 자금의 세탁을 자금세탁법의 범
법행위로 간주함.

21) 미국의 경우, FCPA의 위반을 미연방 자금세탁방지법의 구체적인 위법행위(speci-
fied unlawful activities)로 간주하여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임을 인지하고, 금
융거래를 수행하거나(knowing conduct) 수행하려는 행위 또는 뇌물제공을 이행
하려는 목적으로 국내외 간에 자금을 이동하거나 제공받은 뇌물의 성격·위치·출
처 또는 소유를 은폐하기 위한 자금 이전임을 알면서 이를 이행하는 행위를 자금
세탁방지법으로 처벌함. 따라서 불법자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도 동 조항에 따라
제재받을 수 있음.

22) 여기서 뇌물은 bribe가 아닌 bribery로 쓰여지므로 뇌물자금 자체뿐만 아니라 뇌물
로 얻어지는 수익(proceeds)도 자금세탁방지법의 규제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음.

23) 그러나 협약은 능동적인 뇌물수수만을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음.

- 캐나다의 경우, 부패방지법을 위반하는 행위나 또는 캐나다 영토에서 발생하였다면 불법인 행위의 결과로 직·간접적으로 습득한 자산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유하거나, 불법자산임을 인지하고 이를 은닉·전환하기 위하여 사용·이전·취급·처리·변형하는 자는 최대한 10년 미만의 징역에 처하거나 약식판결에 의하여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그리고 5만 달러의 벌금에 처함.²⁴⁾
 - 부패방지법에 저촉될 경우, 최대한 5년 미만의 징역형이 부과되는 것과 비교하면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른 형량이 더 무거움(Section 3(2)).

다. 회계처리

- 회계장부 및 기록, 재무제표 공시, 그리고 회계 및 감사기준에 관한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할 기업이, 외국공직자에 대한 뇌물공여 및 수수를 은닉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밀장부를 작성하거나 불법·미확인된 상거래 혹은 허위지출을 하거나 또는 부정확한 채무의 계상 또는 허위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자체 법 및 규정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상기 기업들의 회계관리 소홀 및 위조에 대하여 효과적인 그리고 균형잡힌, 재발방지 차원에서 민사상, 행정상 또는 형사상 처벌을 부과함(제8조).
- 1997 개정 권고안은 각 당사국이 기업회계의 의무화 내지는 강화 그리고 독립적 외부감사 및 기업 내부의 통제실시 등에 대한 일련의 권고를 제시하고 있음(1997 권고안 제5조).

24) DAFPE/CFA/WP8(97)14/REV5.

25) Corruption of Foreign Public Officials Act, Section 4(2), 5(2).

- 주해에 따르면 동 조항은 회계감사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으며 특히 뇌물행위가 외국에서 발생하더라도 회계상의 법규위반은 기업의 본국에서 보통 발생하며,
- 불확정채무를 공개하는 재정보고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는 기업이 부패방지협약의 적용으로 이에 따른 잠정적인 의무와 유죄판결로 입을 수 있는 손실을 (사전에)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 동 조항은 뇌물제공을 방지하는 데 즉각적인 그리고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의견임.

라. 상호법률지원과 은행기밀

- 각 당사국은 뇌물공여행위와 관련하여 일방 당사국이 제기한 형사상의 조사 및 소송 그리고 법인에 대한 비형사소송을 위하여, 해당국내 법률 및 관련 조약과 협정에 의거, 가능한 한 최대한 즉각적이고도 효과적인 법률상의 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 각 당사국은 요청이 있으면 조사활동을 지원하거나 소송절차의 참여에 동의하는 자들(구금상대인 자 포함)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이중범죄를 조건으로 법률상의 지원을 할 때, 지원요청에 대한 범죄가 동 협약의 범주에 포함된다면 이중범죄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함.
- 어떤 당사국도 ‘은행기밀보호를 구실로’ 이 협약의 범주내에 속하는 ‘형사사건’에 대한 상호법률지원을 거절할 수 없음(제9조 3항).
 - 단, 금융정보 제공 등의 사법공조에서 비형사 사건은 제외됨.

6. 협약개정과 가입 및 탈퇴

- 모든 당사국은 이 협약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는데, 당사국의 만장일치 또는 만장일치로 결정한 기타 방법에 따라 채택된 개정안은 비준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60일 후 또는 당사국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개정안이 채택된 날로부터 발효됨.
- 동 협약은 OECD회원국이나 실무작업반 참여국으로서 모든 비회원국에게 개방되며, 각 참가국은 1997년 개정 권고안과 함께 1996년 세금공제에 관한 이사회 권고안을 적용받음.
 - 당사국이 수탁자에게 협약탈퇴를 서면으로 통보하면 접수된 지 1년 후부터 탈퇴가 유효함(제17조).

7. 1997년 개정 권고안의 추가 내용

- 효과적인 뇌물근절을 위한 전제조건은 정상적인 회계제도의 도입에 있는 바, 1997년 개정 권고안은 기업회계의 강화기준, 독립적 외부감사 그리고 기업 내부통제의 강화를 권고함(제5장).
- 구체적으로는 부외거래 금지와 입출금 기록유지, 완전한 채무공시 그리고 회계상 누락 및 조작에 대한 회원국 정부의 제재조치를 권장하고, 외부감사의 독립성과 그 시행요건 및 객관적 평가를 위한 기준이 적절한지 그리고 경영진 및 공무원 뇌물행위(또는 그 징후)에 관하여 감사진이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고려하며, 윤리강령 등 적절한 기업내부통제의 채택과 임직원 교육, 경영진과 무관한 감사기구 그리고 부당한 상부명령으로부터 직업윤리 준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확보를 권장함.²⁶⁾

- 권고안은 또한 각 회원국이 WTO에서 검토중인 정부조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협정을 지지해야 하며, 국내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기업과 상응하게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기업에 대해서도 정부조달에 의한 입찰자격을 박탈할 것을 권고함.
 - 정부조달을 위한 계약 체결시 기업이 당해 사안에 있어서 부패방지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동 법을 준수할 것 그리고 내부관리 및 회계상으로 부패방지법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통제기능을 갖추었음을 서약하도록 함.²⁷⁾
 - 이 밖에도 양자간 조달지원(Bilateral Aid Procurement)에 있어서 부패방지조향을 요구하고 국제개발기구 부패방지조향의 이행을 위하여 노력할 것 등을 권고함.
- 또한 1994년 권고안에 따르면 뇌물공여에 대한 제재로서 관할권 및 기타 사법원칙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적정한 사례에 있어서) 정부보조, 면허, 조달 등 기타 공공지원을 중단하는 문제를 검토하여 구체적이고도 의미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바, 수출신용과 신용보증실무반(ECG)²⁸⁾은 공적 수출신용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문에서의 비리방지를 위하여 각국의 법적 규제와 관행을 설문 조사하고 1999년 10월 이를 집중 논의하기로 함.
- 한편, 이행감독과 후속조치에 관한 OECD 작업에 기업 간의 부패와 거래를 취득 내지는 유지하기 위한 목적 이외, 다른 이유로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까지 추가적으로 포함하는 문제를 검토함.

26) 한 예로 상부로부터 뇌물제공을 강요받았을 때 해당 임직원이 이를 거부할 권리와 이로 인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함.

27) 개발원조위원회(DAC)에 의하면 1999년 현재 모든 지원 당사국이 조달관련 서류에 부패방지 조향을 강화하거나 명시화한 것으로 보고됨(DAFFE/IME/(99)12).

28) Working Party on Export Credits and Credit Guarantees.

Ⅲ. OECD 실무작업반에서의 논의

1. 후속절차 규정

- 부패방지협약과 주해에 따르면 각 당사국 법률체계의 근본적 원칙을 깨뜨리지 않으면서 당사국들의 부패방지를 위한 조치에는 ‘기능적 동등성’이 부여되어야 함.²⁹⁾
- 구체적으로 동 협약의 이행을 감독·촉진하기 위한 체계적인 후속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데 있어서, 당사국들의 협조하에 CIME 산하 뇌물방지 실무작업반이 기본틀과 위임사항에 따라 감독 및 평가를 수행함(제12조와 주해).
 - 동 작업반은 각 당사국이 제출하는 질문서의 답변과 보고서에 근거하여 개별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행조치에 대하여 평가를 하고 또한 국제상거래의 뇌물관행과 관련한 특정사안 등을 심사함(1997 권고안 제8조).
- 1999년부터 2000년 4월까지 진행되는 1단계 평가에서 협약준수를 위한 각 당사국의 법문안과 권고안 이행을 위한 구체적 조치들을 심사하고, 2000년 하반기부터 2005년까지 시행할 2단계 평가에서는 각 당사국 규

29) 증거가 충분하더라도 공익을 위하여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각국의 법률체계에 따라 기소여부를 결정하거나 부패척결을 위한 각국 정부의 의지가 다를 수 있으므로, 부패방지법의 기능적 동등성을 유지하는 것이 CIME나 CFA 등 후속 작업반의 중요한 과제임.

제조치의 구조와 적용 그리고 1997년 개정권고안에 제시된 비형사적 조치의 이행을 검토하기로 함(DAFFE/IME(98)17).

2. 향후 쟁점사항

- 한편, 동 실무작업반은 다음의 5가지 쟁점사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검토한 뒤, 권고안을 1999년 5월 OECD 각료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으로 잠정보고서를 작성함(DAFE/IME(99)12).
 - 뇌물행위에 연관된 ① 해외 정당 및 공직자 ② 공직후보자 ③ 자금 세탁 ④ 해외자회사 ⑤ 역외센터의 역할
- 작업반은 ⑤항을 제외한 사항들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현존하는 협약과 각국의 국내법이 상기 쟁점사항을 해소하는 데 얼마나 적절한지 설문조사 및 분석하였고 최종 권고안을 작성중임.
 - 역외센터에 대한 문제는 1999년 2월 특별회의를 파리에서 개최하여 뇌물 관련 사례의 조사와 기소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따른 어려움을 논의함.

가. 정당(인)과 공직후보자에 대한 제재문제

- 우선, 해외 정당 및 정당인이 공직자인 경우 또는 이들이 중개인이나 공모자 내지는 뇌물의 수혜자인 경우, 현존하는 협약내에서 이들 정당(인)에 대한 제재가 가능함.³⁰⁾

30) 미국의 경우, 정당·정당인이나 공직후보자는 공직자와 동일하게 “(A)(i)(ii)공무와 관련하여 이들의 결정이나 행위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또는 (iii)부적절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혹은 (B)이들이 외국정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뇌물을 제공, 약속하는 행위”는 위법행위로 간주함(FCPA

- 그러나 외국 공직자가 뇌물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무의식적으로 또는 협박이나 술책에 의하여 넘어가는 경우는 동 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님.
 - 작업반에 따르면 협약이 적용될 수 없는 행위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므로 협약을 실제 적용·평가하면서 정당(인)을 제외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음.
 - 물론, 외국공직자와 정당(인)을 동일시하거나 또는 직위남용(trading in influence), 회사자금의 남용이나 정당 및 선거기부금에 대한 국내법으로 각국이 처벌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방법으로는 균일한 적용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문제임.³¹⁾
- 마찬가지로 공직후보자에 대한 제재조치도 협약을 이행하면서 문제점을 파악,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함.
- 공직후보자의 범위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선거직 후보자만 공직후보자로 할지 아니면 공직에 지명된 자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한 이견이 있음.
- 약속이 이루어지고 후보자가 선출된 후 뇌물이 제공되면 실질적으로 뇌물이 공직자에게 제공된 것으로 제재가 가능함.
- 반면, 뇌물이 제공되지 않거나 또는 뇌물이 취임하기 이전에 제공된 경우는 동 협약이 적용될 수 없는 바, 이를 회사자금의 남용, 정당기부금법의 위반, 뇌물미수죄로 각 당사국이 기소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들 경우에는 법적 구성요건이 만족되지 않을 수 있으며

(a)(1)). 그러나 EU에서는 국가공무원의 정의에 국회의원, 장관 그리고 최고재판소 재판관 등이 '자동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음(CFCE, EC Document 498Y12 15(01)).

31) 정당기부금에 대한 법이 외국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있음.

조치의 균등성 측면에서도 문제시됨.

- 한편, 공직후보자에게 뇌물제공 약속을 하였으나 공직자로 선출되지 않은 경우, 후보자를 기소하기가 실제로 어려움.
 - 일부 국가에서 국내외 공직후보자를 공직자와 동일시하기도 하며 뇌물제공의 미수죄(attempt)로 기소할 수도 있지만,
 - 후보자가 공직자로 간주되지 않는 많은 국가에서 특혜를 제공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후보자에게 ‘미수’의 개념을 적용하기 어려움.³²⁾

나. 자금세탁법과의 연계

- 많은 국가에서 국내공직자에 대한 뇌물이 자금세탁법의 적용대상이므로 부패방지협약 제7조에 따라 외국공직자의 뇌물(bribery)도 동 법의 저축을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국내공직자에 대한 뇌물이 당사국에서 자금세탁법의 적용대상범죄가 아니거나 수동적인 뇌물만이 적용대상인 경우 협약에 따라 수동적인 뇌물만이 조사대상이므로 협약의 실효성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은행관계자가 특정 예금을 뇌물로 제공된 자금 또는 뇌물로 얻은 수익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을 때, 이를 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지 또는 보고하지 않은 은행관계자를 처벌할 근거가 있는지가 쟁점임.
 - 작업반은 협약 제3조가 능동적인 뇌물제공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향후, 금융기관이나 역외센터 등을 통하여 불법적인 수익금을 세탁

32) 일부 국가에서는 직위나 자금남용 또는 정당 및 선거기부금에 대한 국내법 등 간접적 방법으로 후보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의견임.

·은닉하려는 경향이 증가할 것이라는 뜻에서 돈세탁이 뇌물행위에 있어서 근본적 요인이라는 데 동의함.

- 포괄적인 뇌물행위를 규제하는 국가뿐만 아니라 수동적인 뇌물행위를 규제하는 몇몇 국가의 경우 예금이 뇌물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협약의 주해에 따라 은행은 이를 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있음.
 - 그러나 뇌물로 발생한 수익(proceeds)을 고려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금융거래가 의심시될 때 이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으나 불법 자금과 합법자금을 구별하기 쉽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7조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불법수익금의 세탁을 방지하기 어려움.³³⁾
- OECD 작업반은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나 IMF 등 다른 국제기구가 자금세탁 관련 이슈를 검토하는 데 더 적절하다는 의견임.
 - 그러나 1996 FATF 권고안 제4조는 자금세탁의 적용범위를 모든 중대한 범죄로 확대할 것을 건의하고 있고,³⁴⁾
 - 협약의 이행을 감독함에 있어서 특히 자금세탁과 뇌물과의 연관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임.
- 따라서 작업반은 협약에 정의된 뇌물이 자금세탁법의 목적상 중대한 범죄임을 천명하는 선언을 각료들이 채택하도록 권고함.
 - 비록 제7조의 요건을 확대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료들이 적절한 방법으로 자금세탁 관련 기관에게 작업반의 이러한 의견을

33) 대부분의 알려진 뇌물사례에 의하면 뇌물자금은 엄격한 은행기밀법이 적용되는 국가에서 세탁되는 경향이 있음(DAFFE/IME/BR(98)9/REV1).

34) FATF는 개인과 법인의 익명 또는 가명계좌의 개설을 금지하고(제10조) 이들의 신분증명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도록(제11조) 권고함.

전달하도록 권고함.

다. 해외자회사

- 조세 및 기타 이유로 해외 자회사를 통한 소위 수출 커미션이라 일컫는 뇌물공여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모기업이 위치한 당사국이 해외 자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모기업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는 동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결정적인(crucial) 과제라는 작업반의 의견임.
- 해외자회사가 협약을 위반할 경우, 만약 모기업이 뇌물제공을 지시하였다면, 모기업의 정부가 당해 기업 또는 그 임원을 기소할 수 있음.
 - 단, 모기업이 법의 저촉을 인지하지 않고 있었을 경우는 예외임.
 - 해외자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은 뇌물행위가 전적으로 해외에서 발생하고 모기업의 내국인이 연루되어 있지 않으면 관할권을 행사하기 어려움.³⁵⁾
- 모기업이 뇌물제공을 인지하고 있었어야 하거나 또는 인지하고 있을 경우, 요건은 당사국이 기업법에서 기업의 책임(corporate responsibility)이라는 개념을 적용하고 있는가임.
 - 해외자회사에 대한 모기업의 조직과 통제에서 의무위반 또는 상당한 태만이나 무관심으로 모기업 또는 그 임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음.
 - 그러나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도 모기업의 인지도가 공모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면 당해 기업을 기소

35) 만약 내국인이 연루되었다면 확대된 속인주의 원칙(extended nationality)에 따라 해외 자회사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나 작업반은 협약 4조에 제시된 원칙의 범위 이상으로 관할권을 해석할 수 없다는 의견임.

하기 어려움.

- 작업반은 서명국이 해외 자회사에 관한 모기업의 통제에 ‘기업의 책임’을 포함하도록 권고하는 방안을 고려하면서 이에 대한 확정적인 해결 방안은 동 협약의 적용결과를 지켜본 후 결정하기로 함.
 - 또한 해외 자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의 방치를 민사상으로 제재하는 조치를 추가로 검토하고,
 - 모기업과 자회사의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나 기업윤리 그리고 국제적인 회계원칙의 확립이 자체 감독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라는 의견임.
- 수출 커미션 등의 명목으로 해외자회사(또는 역외센터)를 통하여 지불되는 뇌물의 경우, 과세 추적이 어렵고 손금산입규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관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당사국 중 미국만이 특정외국법인(CFC: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규정을 통하여 이러한 자금흐름을 통제함.
 - 기업의 이익을 위하여 CFC, 또는 그 임직원, 주주 및 대리인이 정부관리나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직·간접적으로 지불하는 자금은,
 - 국내법에 따라 불법으로 손금산입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이를 과세유예를 하지 않음으로써 뇌물액수만큼을 주식배당금으로 처리, 주주를 과세하며
 - 또한, 해외자회사가 지불한 불법적인 뇌물은 손금처리를 허용하지 않음.³⁶⁾
 - 당해 조항은 뇌물을 단순히 손금불산입하는 규정이 효과가 없다는 의회 의견에 따라 해외사업과 관련한 세금우대에서 뇌물제공을 제

36) Anti-deferral Rule to Subpart F Income, IRC §952(a)(4), Tax Reform Act of 1976, DAFNE/CFA/WP8(98)14.

외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됨.

- 한편, CFA 실무작업반(WP8: Working Group No.8)은 해외 자회사, 특히 조세부담이 적은 지역의 자회사가 지불한 뇌물에 대한 각국의 조세상 조치를 검토하고 있음.
 - 호주, 독일 그리고 영국은 CFC에 대한 입법조항을 유지하고 있으나 뇌물을 CFC 소득으로 간주하고 있음.
 - 즉, 영국의 경우, 이윤을 책정함에 있어서 CFC를 영국내 기업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영국 형법에 위반되는 자금제공은 공제가 되지 않음(577A ICTA 1988).³⁷⁾
 - 벨기에는 CFC에 관한 입법조항은 없지만 세무회피를 위한 거래의 경우 조세규정상 세무당국이 거래의 법적 형태를 무시하고 해외 자회사가 지불한 비밀 커미션을 자국내 기업이 지불한 것으로 간주함(344 §1, Belgian Tax Code).

라. 역외센터

- 작업반은 뇌물거래와 관련한 역외센터의 역할이 민감하고도 심각한 문제임을 공감하고 이에 대하여 1999년 2월 파리에서 각국의 검찰당국과 특별회의를 개최한 바 있음.
 - 국제금융망을 통하여 자금을 전송할 때 범법자들은 과다 또는 과소 송장의 작성으로 뇌물기금(slush fund)을 만드는 데 역외센터가 조세피난처 및 기업이나 은행의 자금도피처로 작용하며,
 - 일부 연구에 의하면 유통되고 있는 자본의 약 50%가 이러한 방법

37) 만약 모기업이 위법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며 모든 위법행위가 해외에서 이루어지면 기소될 수 없음. 단, 편지 등 불법행위에 동의하는 증거가 있으면 모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선물이나 접대비는 공제대상이 아님(DAFFE/CFA/WP8(98)14/REV1).

으로 역외센터를 거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역외센터를 거친 불법자금은 정상자금과 구분되지 않음.

- 이 밖에도 성공적 기소에 장애가 되는 요인은 은행과산법의 남용 또는 실제 이용자 신분의 미확인 그리고 유령회사(shell company)를 이용함으로써 실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기업의 법적 형태임(DAFFE/CFA/WP8(98)14).
- 회의에 참석한 검찰당국은 불법적 자금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재 및 집행조치를 수반한 투명성 확보에 대하여 국제헌장(international charter)을 마련하고, 검찰당국 간의 직접적인 공조, 과도한 은행기밀 또는 이중범죄의 요건 완화, 실제 소유자를 명기하도록 하는 기업법의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임.
- 작업반은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와 기업법 그리고 사법적 국제공조에 있어서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동의함.
 - 금융기관의 성실성 제고와 관련된 FATF의 작업 특히 역외 금융거래(은행기밀) 그리고 기업의 자금도피처(corporate havens)와 관련하여,
 - 자금세탁 적용범죄의 확대나 직무상의 기밀 등 FATF가 정한 최소한의 투명성 기준에 대하여 작업반의 보조적 역할이 요구되며,
 - 또한 사법당국 간의 공조체계가 존재하지 않은 국가에서 발생하는 자금거래로 인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고위직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임

3. 뇌물제공 교사(solicitation)에 대한 제재

- 기업/산업자문위원회(BIAC)에 따르면 뇌물제공에 초점이 모여진 최근 일련의 규제조치는 직·간접적인 뇌물요구에 직면한 기업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음.
 - 또한, 효율적인 부패근절을 위해서는 뇌물을 요구받은 기업의 협조가 중요함(DAFFE/IME/BR(98)14).
 - 따라서 당사국 정부들은 뇌물요구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뇌물요구의 방지와 기업지원 그리고 국제적 공조를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한 방편으로 이에 대한 OECD 각료회의와 각국 정부의 공식선언이 방안으로 제시됨.
- 효율적 공조가 이루어지려면 해당 국가와 시장에서 고발인(기업)이 누리고 있는 사업상 이익이 보호되어야 하며, 특히 경쟁기업 간 또는 관련 국가 간에 사업상 기밀이 엄격히 지켜져야 함.
 - 따라서 고발인의 익명성과 외교적 특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 익명 및 집단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창구를 관련기관에 설립하되, 이러한 창구는 이해상충(conflicts of interest)을 피하기 위하여 사법기관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함.
 - 한편,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과 같이 구체적 사례에 있어서 특정 거래가 부정행위인지를 판정해 줄 수 있는 중립적 자문기관이 필요함.
- ※ 피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특정 형사사안과 무관한 사례를 통하여 (구속력이 있는) 자문을 하고 남용을 막기 위한 예외조항을 두되 예비조사에서 취득된 정보에 대하여 법정에서 면책특권을 부여함.

IV. 부패방지협약과 조세상의 규제조치

- 부패근절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서 지난 1996년 OECD 산하 재정위원회(CFA)는 뇌물의 손금불산입 등 조세상의 조치를 권고한 바 있음.³⁸⁾
 - 이에 근거하여 1996년 권고안은³⁹⁾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의 손금불산입을 제안하였고 1997년 개정 권고안은 그 이행을 촉구함 (Section IV, C(97)123/FINAL).
- 한편, CFA는 CIME와의 공조하에 동 권고안의 이행을 체계적으로 추진·감독하고 1999년 각료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실무작업반 WP8을 가동함.
 - 손금불산입의 효과적 이행, 세무감사에서의 뇌물적발 그리고 세무 관련 정보의 상호교류 등 손금불산입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과 상기 5가지 쟁점사안의 조세관련 부문을 점검중임.⁴⁰⁾
 - 이와 별도로 CFA는 자금세탁에 대한 1998년 G7 재무장관의 권고에 따라 1999년 1월 FATF와 회합하여 세무당국의 자금세탁 관련 정보교환을 점검키로 합의함.⁴¹⁾

38) Recommendation on the Tax Deductibility of Bribes to Foreign Officials, C/M (96)8/PROV, 1996.

39) C(96)27/FINAL, 1996.

40) DAFFE/CFA/WP8(98)12, 14, 1998.

41) DAFFE/CFA/WP8(99)1.

1. 논의배경

- 형사처벌과 함께 뇌물의 손금불산입이 OECD 협약상 부패방지를 위한 구체적 제재조치로 제시되었지만 손금불산입 규정이 뇌물을 근절할 수 있는 효과적인 그리고 실질적인 조치로 간주되기는 어려움.
 - 이는 정상적인 커미션과 위법적인 뇌물의 구분, 가공비용의 추적, 그리고 역외센터의 이용 등 뇌물제공행위를 감시·제재하기 위한 세무조사가 실질적으로 쉽지 않은 반면,
 - 손금불산입으로 인한 기업의 추가적 뇌물비용은 뇌물의 법인세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불과하기 때문이다.⁴²⁾
 - 그러나 손금산입 조항은 뇌물을 기업비용으로 처리, 세금에서 공제함으로써 국가가 부패행위를 조세정책으로 지원하는 결과가 유발한다는 뜻에서 원칙상의 문제로서 손금불산입이 필요함.
- 다만 효과적인 손금불산입의 이행 등을 통한 부패근절을 위해서는, 과학적이고도 엄정한 회계 및 조세행정제도의 도입, 외부감사의 확립 그리고 세무관련 정보의 국제적 교류와 공조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선행조건임.

2. 뇌물공여에 대한 손금불산입

- 부패방지협약에 따라 각 당사국은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에 대한 손금 산입을 인정하지 않는 법을 마련하여야 함.

42) 이 밖에도 뇌물을 손금불산입할 경우, 수뢰자의 신원 등 뇌물과 관련된 정보를 세무당국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실제 상황에서 기업들은 손금산입을 위하여 뇌물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기보다는 커미션 등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음.

-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손금불산입 규정에 대한 국가 간 기능적 동등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CFA는 주기적 감독을 수행하고 있음.
- 모든 OECD 회원국에서는 국내공무원에게 제공된 뇌물은 형사처벌되는 불법행위로서 제공된 뇌물의 손금산입도 허용하지 않음.
- 한편,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의 과세문제는 수뢰자와 제공자 입장에 따라 분류될 수 있음.
 - 뇌물제공자가 거주하는 모든 OECD 회원국에서 제공된 뇌물은 수뢰자의 과세대상 소득임.
 - 만약 법정에서의 위법판정으로 뇌물이 몰수되면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데, 예외적으로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독일, 프랑스, 그리고 룩셈부르크에서는 몰수된 뇌물도 과세대상임.
- 손금산입과 관련하여 부패방지협약이 발효되기 이전 외국공무원에게 제공된 뇌물에 대한 각국의 세법 처리규정은 <표 1>에 제시되어 있음.
- 무조건 손금불산입되는 국가는 뇌물이 접대비로 간주되는 일본과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탈리아임.
 - 당해 뇌물이 손금산입되는 국가는 수혜자가 입증되어야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분류되고 뇌물이 불법인 경우에 손금불산입이 되는 경우는 제공자의 거주지국과 수혜자의 거주지국에 따라 처벌규정이 다름.
- 뇌물의 위법여부와 관계없이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경우:
 - 프랑스, 오스트리아에서는 무조건 뇌물의 손금산입이 가능하며 호주, 뉴질랜드, 스페인, 스위스, 독일, 룩셈부르크에서는 수혜자의 신원이 밝혀져야 함.

〈표 1〉 외국 공무원에게 제공한 뇌물의 손금불산입에 대한 OECD회원국의 제도

정상적인 조세규 정상의 손금산입	수혜자가 누구인지 입증되 지 않아도 손금산입 ¹⁾	오스트리아, 프랑스
	수혜자가 누구인지 입증되 는 경우 손금산입	호주, 독일 ²⁾ , 뉴질랜드, 포르투갈 ²⁾ , 스페인, 스위스
	특정 조건하에서 손금불산입	벨기에 ³⁾ , 독일 ²⁾ , 포르투갈 ²⁾ , 네덜란드 ⁴⁾
	무조건 손금불산입	이탈리아 ⁵⁾ , 일본 ⁶⁾
뇌물이 불법인 경 우에 손금불산입	제공자의 거주지국에서 불법인 경우	영국, 미국
	수혜자의 거주지국에서 불법인 경우	캐나다 ⁷⁾ , 덴마크 ⁸⁾ , 핀란드 ⁸⁾ , 노르웨이 ^{8),9)} , 스웨덴 ⁸⁾

- 주: 1) 세무당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수혜자의 신분에 대한 정보를 공식적으로 요
청할 수 있는데, 납세자의 이 요구에 부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2) 포르투갈과 독일에서는 단순히 사업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한 뇌물은 선물로
간주하여 손금불산입.
3) 법률로 정한 특정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손금불산입(또는 특별한 과세대상
이 됨).
4) 사업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출이라는 증거가 없는 경우 손금불산입.
5) 손금산입을 위한 특별한 규정이 없음.
6) 접대비로 간주하여 손금불산입.
7)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 계획이 캐나다에서 이루어진 경우.
8) 수혜자의 거주지국에서 뇌물수수가 관행인 경우 손금산입.
9) 손금불산입을 목표로 법 개정을 추진중임.

자료: 안종석,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방지: OECD의 논의 및 회원국의 관련제
도 현황』, 한국조세연구원, 1997. 1, DAFFE/CFA/WP8/WD(96)24, 1996.

- 독일과 포르투갈의 경우, 수혜자의 신원과 뇌물이 이익의 실현과 직접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고 네덜란드에서는 뇌물이 사업

상 필요한 실질적인 지출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손금산입이 허용됨.

- 뇌물이 불법인 경우:

- 미국과 영국에서는 제공자의 거주지국에서 불법일 때, 뇌물의 손금산입이 금지되고,
- 캐나다에서는 수혜자인 외국공무원의 거주지국에서 불법인 경우, 그리고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에서는 수혜자의 거주지국 상관행에 위배되는 경우 불산입됨.

-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에 대하여 명문화된 조항은 없었음.

- 다만, 법인세법 제18조 2의 접대비는 '법인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인바,
- 국세청 해석에 따라 뇌물을 수수한 외국공무원의 거주지국에서 뇌물수수가 불법이면, 그 뇌물은 업무와 무관한 경비로 간주되어 손금불산입되었음(안종석, 1997).

- 부패방지협약에 따라 각 당사국이 손금불산입을 적용하기 위한 세법개정 등의 제도개선을 수행중임(표 2 참조).

-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과 관계없이 손금산입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가 다수인데 그 중에는 뇌물을 손금처리되지 않는 비용으로 간주하거나(일본·헝가리·터키) 또는 손금처리되는 비용의 요건(멕시코·아일랜드)을 만족할 수 없거나,
- 이 밖에도 행정규정(한국·아일랜드)이나 판례법(핀란드) 등으로 불허하기도 함.

〈표 2〉 외국 공무원에게 제공한 뇌물의 OECD회원국 손금불산입 규정

불법조항과 무관하게 손금불산입	명시적인 손금불산입	이태리, 체코, 룩셈부르크 ¹⁾ , 뉴질랜드 ¹⁾ , 폴란드,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¹⁾ , 덴마크, 그리스, 호주 ¹⁾ , 벨기에, 아이스랜드,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실질적으로 손금불산입	일본, 한국, 핀란드, 헝가리, 멕시코, 터키, 아일랜드
불법인 경우 손금불산입	포르투갈, 영국 ²⁾ , 미국 ²⁾ , 독일, 오스트리아 ²⁾ , 네덜란드 ²⁾ , 프랑스 ²⁾ , 캐나다 ³⁾	

주: 실질적 손금불산입은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손금산입되는 비용의 규정 또는 판례법으로 손금불산입되는 국가로서 아일랜드는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되며 실제로도 뇌물이 손금처리될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할 수 없음.

- 1) 손금불산입을 규정한 법의 제정이 의회 등에 계류중인 국가임.
- 2) 형사처벌이 내려질 경우, 손금불산입.
- 3) 제공자의 거주지국에서 불법이고 캐나다에서 모의를 할 때 손금불산입.
- 4) 아르헨티나, 브라질은 손금불산입의 사실만 천명함.

자료: DAFFE/CFA/WP8/WD(98)14, DAFFE/IME(99)12

- 한편, 캐나다 등 다수의 국가에서는 손금산입을 허용하지 않는 요건으로 뇌물제공이 불법이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영국, 미국,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은 형사처벌을 전제로 함.
 - 미국에서는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가 부패방지법(FCPA)에 위법일 때 공제가 허용되지 않고 해외자회사의 경우는 형사처벌과 관계없이 손금처리가 되지 않음.
- 법리적으로는 위법사실 즉, 지불된 자금이 뇌물이라는 사실이 밝혀져야 손금불산입 여부도 결정되므로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영국 등의 입장이 논리적임.

- 그러나 실질적으로 형사처벌이 내려진 경우에만 손금불산입이 된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손금 처리가 되는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이 경우 법정에서 개별 사례에 대한 위법판정이 내려진 후, 손금불산입의 제재조치가 가해지는지(retroactively) 아니면 뇌물제공이 원칙적으로 불법이므로 손금산입이 허용되지 않는지가 불명확함(DAFFE/CFA/WP8/WD(96)18).
- CFA는 각국의 뇌물자금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검토중이며 그 결과를 1999년 각료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임.⁴³⁾

3. OECD 세무조사 가이드라인⁴⁴⁾

- CFA는 손금불산입과 뇌물을 적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OECD 가이드라인과 커미션, 수수료, 보상금 등의 지불금에 대한 의무적 보고조항의 도입을 검토중임.⁴⁵⁾
- 뇌물자금이나 불법거래를 포착하기 위한 기법을 지원하기 위하여 감사 가이드라인(auditing guideline)을 세무당국이 설정하여,
 - 입증책임 기준, 조사 근거, 구체적 사례, 중점감시 사업분야 그리고 관련 정보를 기소 당국에게 이관할지 여부 등에 대한 지침안을 개발중임.

43) DAFFE/CFA/WP8/WD(98)14.

44) OECD Audit Guidelines for The Detection of Bribes to Foreign Public Officials, 당해 사항은 미국의 Internal Revenue Manual and Audit Techniques Handbook 과 Legal Standard for Applying Section 162(c)(1)를 참조(DAFFE/CFA /WD (98)5, DAFFE/CFA/WD(98)8).

45) DAFFE/CFA/WP8(98)12/REV1.

- 커미션 등 유사한 지불금의 보고에 대한 각국의 세무규정을 보면,
 - 벨기에나 프랑스는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일본은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수취자의 신분을 파악함.
 - 독일, 룩셈부르크, 스위스, 뉴질랜드 등에서는 수취자의 신원이 확인되어야 손금불산입 여부가 확정될 수 있음.
- 프랑스에서는 개인과 법인 또는 공공기관을 막론하고 거주자와 비거주자에게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커미션을 한 해에 동일인에게 500FF 이상 지불한 경우 세무당국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었음.
 - 그러나 뇌물의 손금산입을 불허하는 새 법으로 커미션 등에 대한 의무적인 보고가 폐지되었고 특히 역외 금융센터를 이용한 뇌물의 경우 수혜자를 밝혀내기 어렵다고 논함.
- 그러나 커미션 등 유사한 지불금에 대하여 의무적인 보고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은 수취자 소득에 대한 과세뿐만 아니라 뇌물수수 관행을 감시·감독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되며 국가 간 자동적 또는 자발적 정보교환에 유용하다는 것이 CFA 산하 실무작업반(WP8)의 의견임.
- 마지막으로 실무작업반(WP8)은 정당(인)과 공직후보자에게 제공된 자금의 세무처리규정과 관련법을 검토중임.

4. 세무관련 정보교류

- 전술한대로 효과적인 손금불산입 규정의 이행을 통한 부패근절을 위해서는 뇌물과 관련된 세무정보의 교류가 필수적이며, 특히, 뇌물수취자가 속한 국가의 사법당국이 국내외 정보를 입수하여 처벌을 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 따라서 세무당국과 사법당국 등 국내 유관기관 간의 정보공유 그리고 국가 간의 정보교환이 CIME와 CFA 작업반회의에서 쟁점사안으로 대두됨.
- 우선, 국내 유관기관 간의 정보교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는바(1996년 기준),
 - 미국의 경우, 자발적으로 정보교류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외 몇몇 국가의 경우, 요청이 있으면 정보제공이 가능하나 영국과 아일랜드는 사법기관의 요청이 있더라도 세무당국이 뇌물관련 정보를 사법기관에게 제공할 수 없음.
- 한편, 양자간 협약에 따라 제3국의 세무당국으로부터 입수된 정보를 세무당국이 다른 국내기관과 공유하는 방안에는 국내법이 이러한 정보교환을 허용하더라도 국제법으로 허용되지 않음.

<표 3> 세무당국이 보유한 뇌물관련 정보의 사법기관과의 공유에 대한
OECD회원국의 제도

자발적인 정보제공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불가
사 법 기 관 의 요 구 가 있 을 경 우 정보제공	가능	벨기에, 덴마크, 이탈리아(원칙적으로 가능),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미국
	일반적으로 불가 ¹⁾	호주, 오스트리아, 스위스
	불가	아일랜드 ²⁾ , 영국

주: 1) 예외적인 경우 가능.

2)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될 예정임.

자료: 안종석,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방지: OECD의 논의 및 회원국의 관련제도 현황』, 한국조세연구원, 1997. 1, DAF/INV/IME(96)9, 1996.

- 양자간 협약은 OECD 모델협약의 규제를 받는데, 동 모델협약 제26조에 의하면 세무관련 정보교환의 대상은 모델협약에 명시된 조세로 한정되며 또한 제공받은 정보는 조세법 위반 이외 뇌물수수 등 다른 범법행위에 관한 형사기소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음.⁴⁶⁾
- 물론, 많은 경우 범법자가 불법으로 간주되는 뇌물수수를 세무당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조세회피’(tax evasion) 조항 등의 조세법 위반을 적용하여 제3국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조세법 위반으로 기소될 때 법정에서 공개되는 뇌물관련 정보를 사법당국이 이용할 수 있음.
- 그러나 제소여부의 불확실성과 공개되는 정보의 불완전성을 고려하면 현존하는 국제협약으로 효율적인 정보교환이 이루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CFA는 국제적 그리고 유관기관 간의 세무정보 교류를 위하여 자금세탁방지법과 같이 국제협약을 따로 마련하는 방안과 모델협약 등 기존 조세협약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함.⁴⁷⁾
 - 한편, 프랑스와 영국이 커미션 지불에 대한 정보교환을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지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가 간 커미션, 수수료 등의 지불금에 관한 양자간 정보교류협정이 증가하고 있음.

46) the recipient country is permitted to disclose the information “only to persons or authorities concerned with the assessment or collection of, the enforcement or prosecution in respect of, or the determination of appeals in relation to, the taxes covered by the Convention”(Article 26 of the 1992 OECD Model Convention on Income and Capital).

47) 재정위원회는 세무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원칙은 관련 정보가 조세법 위반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한다는 의견임(DAFFE/CFA/(95)37/REV1).

- 또한 '자동적 정보교환에 대한 OECD 모델비망록'은 각종 세무정보의 자동적 교환과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지적하고 있음.⁴⁸⁾
 - 특히, 동 비망록은 커미션, 수수료 등의 유사한 지불금에 대하여 유관기관 간의 정보교환을 추진하고(제2조 n),
 - (이미 그러한 협정이 존재하는 경우) 개인과 법인에 제공된 커미션 등의 자발적인 또는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을 강화하도록 권고함.
 - 따라서 CFA는 비망록에 기반하여 요청에 따른 정보교류와 즉각적인 정보교환을 강화하는 조치와 자동적인 정보교환의 확대를 권장함.⁴⁹⁾
- 이 밖에도 CFA에 의하면 1992년 OECD 모델협약에 따라 세무당국간의 동시적 세무조사(simultaneous examinations)가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단, 이는 소득은폐, 자금세탁, 킥백(kickbacks), 뇌물 및 불법자금이 연루된 사례에 있어서 납세자의 정확한 세부담을 결정하기 위한 규정임.

48) OECD Model Memorandum of understanding on automatic exchange, DAFFE/CFA(98)41.

49) DAFFE/CFA/WP8(98)12/REV1, DAFFE/CFA/WP8(98)12, 1998.

V. OECD 부패방지협약의 평가

1. 부패방지의 필요성과 의의

- 부패방지협약 전문은 “뇌물공여가 …… 국제상거래에서 널리 확산된 현상으로서, 심각한 도덕적·정치적 문제를 야기하고, 건전한 통치 및 경제발전을 저해하며, 국제경쟁을 왜곡시킨다는 사실을 고려한다”고 규정함.
 - 한 예로 OECD는 주요 국제거래의 15% 이상이 뇌물비용으로 소요되고 있다고 1997년 추정하고 있으며,
 - 미국은 1994. 4.~1995. 5.까지 개도국의 부패행위로 인하여 개도국 정부조달 등에서 100여 건, 약 450억 달러의 경제적 기회비용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함.⁵⁰⁾
- 따라서 부패방지협약이 체결되게 된 원인은 선진국이 자국 기업에게 동등한 경쟁기회(a level playing-field)를 보장하기 위한 동기에서 출발함.
 - 뇌물제공에 대한 동등한 기회가 보장된다면 이는 효율성과 무관하지만,
 - 만약 그러한 행위가 선진국 등의 일부 기업에게 금지되었거나 또는 부패로 인하여 진입장벽이 발생한다면 ‘단허진 시장에서의 경쟁’이 효율적일 수 없음.

50) 「뇌물방지협상과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1997. 10, 재정경제원 뇌물방지협상 특별 대책반 심포지움 주제 발표자료.

- 즉, 제한적 경쟁은 거래비용의 증가 및 비효율적 자원배분 그리고 후생 감소를 유발함.
 - 또한 국제무역과 투자를 저해하며,
 - 장기적으로는 지대추구행위(rent seeking activities)와 왜곡된 소득 분배로 인한 시장붕괴를 가져온다는 뜻에서 부패행위는 원칙적으로 근절되어야 하는 데 이의의 여지가 없음.
- 요컨대 조세경쟁(tax competition)과 마찬가지로 ‘뇌물경쟁’은 비효율적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는 바람직한 현상임.
 - 동 협약이 체결되기 이전까지 미국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을 명시적으로 불법화한 유일한 국가였으며,
 - 단지, 기존 부패방지법을 확대·적용하거나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률로 뇌물제공자를 민사상으로 처벌할 수 있었고⁵¹⁾ 호주, 벨기에, 덴마크, 일본, 포르투갈, 그리고 스페인은 뇌물제공자를 형사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음.⁵²⁾

2. 부패방지협약의 문제점

가. 기능적 동등성

- 그러나 부패방지협약이 반덤핑협약과 같이 선진국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음.
 - 즉, OECD 협약은 ‘뇌물 수뢰자’로서 공무원의 불법행위는 각국이

51) 前者는 캐나다, 그리스,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웨덴, 터키, 영국이 이에 해당하며 後者는 오스트리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노르웨이 그리고 스위스임.

52) DAFPE/CFA(95)37/REV1.

처한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규제토록 하고 있으나,

- ‘뇌물공여자’에 대한 처벌에서는 “기능적 동등성”을 협약의 주요 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사(solicitation)에 의한 수동적인 뇌물제공이 제재를 받을 뿐만 아니라
- 경쟁기업 및 경쟁국가를 포함한 국제적 감시체계에 의하여 수동적인 뇌물제공까지 ‘피동적으로’ 규제받음.

- 특히, 지역별 관습 또는 정부의 용인과 관계없이 판례법과 성문법으로 허용하지 않는 뇌물제공 행위를 불법화한 규정은 일부 국가, 특히 법제도가 확립되지 않은 개도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다국적 기업에게 제약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비록 공직자를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처벌이 가능하지만 제소 자체가 기업의 이미지에 손상을 가할 수 있음.

- 한편, 뇌물제공을 선동, 지원, 교사하는 등의 공모나 이의 위임을 형사 처벌 대상으로 하고 시도도 범죄행위로 간주하는 반면,⁵³⁾ 정당(인)이나 공직후보자는 외국 공무원의 정의에서 제외함으로써 동 협약의 형평성과 실효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정당한 정치자금과 뇌물의 구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당(인) 등에 대한 예외조항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임.
- 이외 ‘사업상의 이익’ 이외 다른 이유로 오가는 뇌물도 처벌 가능할 수 있어야 함.

53) 미국의 경우, 선동, 지원 또는 교사 등의 행위는 해외부패방지법의 적용요건이 아님.

나. EU 부패방지협약(CFCE)⁵⁴⁾과 OECD 부패방지협약의 비교

- EU 협약에 대비하여 OECD 부패방지협약의 문제점을 검토하면, 이미 지적인 바와 같이 뇌물제공을 교사하는 뇌물의 수요(demand) 즉, 수동적 뇌물행위(passive bribery)가 규제되지 않음으로써 효과적인 부패방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 반면 EU에서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인 뇌물요구는 실제 금전 등의 이익이 교환된 사실과 상관없이 뇌물제공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처벌이 가능함(CFCE 제2조).
 - 또한 규제대상인 이익의 제공은 OECD 협약에서 ‘부적절한 금전상 또는 기타 이익’(undue pecuniary or other advantage)보다 더 포괄적인 ‘그 어떠한 형태의 이익’(advantage of any kind whatsoever)임.
- 둘째로 OECD와 EU협약의 해석에 따르면 ‘사전 합의’ 없이 사후적으로 뇌물이 오가는 데 대한 처벌이 모호하여, 협약의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공무행위와 관련 없는 선물의 제공은 규제대상이 아님.⁵⁵⁾
 - 물론 각 당사국이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사후적인 뇌물행위를 규제할 수 있으나, 이를 명문화하지 않는 국가의 경우, 사전합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임.
- 한편, 기업의 책임에 있어서, EU에서는 기업을 대신하여 부하직원이

54) Convention on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involving officials of European Communities or officials of Member States of European Union.

55) OECD 협약 제1조에 의하면 뇌물행위의 구성요건은 “to offer, promise or give.... advantage to a foreign public official....in order that the official act or refrain from acting”이며 EU협약에서는 “the action of an official who requests or receives advantages to act or refrain from acting”임(CFCE 제2조 5항).

능동적으로 뇌물을 제공할 경우, 기업의 장 등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CFCE 제6조).

- 비리의 교사 내지는 입안뿐만 아니라 감시·통제의 미비 또는 태만 등의 이유로 뇌물방지법 또는 그와 별도의 법⁵⁶⁾에 의하여 처벌이 가능함.⁵⁷⁾
- 이와 같은 기업의 책임은 뇌물제공을 강요받을 수 없다는 직업윤리 조항과 함께 부패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제재조항이 되므로 OECD 협약이 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다. 자금세탁과 회계기준

- 자금세탁방지와 투명한 회계기준의 확립은 기업의 책임과 더불어 OECD 부패방지협약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유용한 도구임.
-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뇌물제공을 자금세탁법의 범죄로 간주하여 엄중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실제 비리행위를 적발하려면 자금세탁의 통로인 금융기관이 불법적인 자금거래를 신고하도록 유인하거나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전제되어야 함.
 - 이 밖에도 예금계좌와 유령회사(shell company) 소유주의 실명화, 은행기밀의 완화 그리고 역외센터의 규제가 요구되는바 현재 CIME 작업반의 검토 내용보다 한층 강화된 권고안이 각료이사회에 제시되어야 함.
- 향후 CIME 감독과정에서 OECD 협약이 의무화하고 있는 회계기준의

56) EC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 제3조는 능동적인 뇌물행위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로 기업의 의무조항을 담고 있음.

57) 다만 부하직원의 범법행위로 형사상 기소되려면 감독에 대한 태만·과실 등의 사실이 입증되어야 함.

투명성과 독립적 감사의 이행을 철저히 감독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은 회계상의 규정을 자세히 명시하여 이에 대한 감독을 증권거래위원회(Security Exchange Commission)가 관장토록 함으로써 기업의 자발적 이행과 내부통제 등을 유도하여 부패방지법의 제도적 효율성을 제고함(DAFFE/ IME/BR/WD(99)3).⁵⁸⁾
- 동시에 CIME는 IMF가 현재 검토중인 금융감독 및 회계·감사기준의 확립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도록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음.⁵⁹⁾

라. 건전한 정부운영 및 기타

- 불합리한 정부운영이 지속되는 한 뇌물에 대한 수요를 통제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무엇보다도 뇌물교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건전한 정부운영이 확립되어야 함.
 - 특히, 정부운영에 있어서 교사방지를 위해서는 업무결과에 따라 보답받는 인센티브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하고 공무원 윤리강령 등을 마련하여 공무수행을 지원·감독할 수 있어야 함.
 - 대민접촉의 가이드라인과 공직수행에서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이 발생할 때 이를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윤리적 행동기준과 함께,
 - 책임소재 및 제재조치의 설정, 투명한 결정과정,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설명과 함께 바람직한 공무수행을 촉진하는 경영기법의 도입이

58) FCPA의 회계조항을 고의적으로 위반하는 자연인은 최고 100만 달러의 벌금 또는/그리고 10년 미만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법인은 최고 25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Sec. 78ff). 한편 상장회사의 경우, FCPA issuers provision(Sec. 78dd-1)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회계장부와 기록을 위조하는 것을 금지하고(Security Exchange Act Sec 13 Rule 13b2-1) 또한 임원이 직·간접적으로 독립감사에게 위증하거나 재무재표의 심사에 있어서 위조, 생략 또는 오도하거나 그렇게 유도하는 것을 위법으로 간주함(Sec 13 Rule 13b2-2).

59) Experimental Case Studies on Transparency Practices, IMF, 1999.

필요함.⁶⁰⁾

- 한편, 뇌물제공을 교사받을 때 기업이 이를 신고함으로써 불리한 위치에 있지 않도록 기업과의 협조하에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국제투명성사회(Transparency International)에 의하면 향후 OECD 협의과정에서 미국 등 일부 국가의 부패방지법과 같이, 예외조항인 급행료에 대한 자세한 정의를 협약에서 제시함으로써 급행료 조항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FCPA는 OECD 협약과 달리 제3자에 의하여 인지된 간접적인 뇌물행위(indirect bribery)를 구체적으로 정의함.

3. 우리나라 해외뇌물거래방지법의 문제점

- 현행 우리나라 부패방지법은 OECD협약의 기본틀을 담고 있으나 처벌기준과 이행조치가 국제적 기준에 미달되므로 보완 및 추가작업이 필요함.
- 법인의 책임은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적 요건이나 우리나라 법은 ‘상당한 주의나 감독’이 전제될 경우 법인의 책임을 묻지 않는데, 법인의 주의나 감독이 명확히 설정되지 않는다면 부패의 사전적 예방이 가능하지 않음.
 - 반면, OECD 협약은 기업이 뇌물방지를 위하여 회계 및 감사기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회계관리를 소홀하거나 위조할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60) Principle for Managing Ethics in the Public Sector, OECD Public Management Committee(PUMA), 1999년 참조.

- 또한, 1997년 개정 권고안이 권고하고 있는 기업회계 및 기업내부 통제의 강화와 독립적 외부감사를 수용할 필요가 있음.
- 뇌물은 중개인을 통하여 전달되는 경우가 상당한데 우리나라 법은 간접적인 뇌물에 대한 처벌규정이 명확하지 않음.
 - OECD 협약은 뇌물이 간접적으로 제공되는 경우도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미국 등은 뇌물임을 인지하고 있는 자에게 가치있는 물품이 제공될 경우도 처벌이 가능함.
- 한편, 법 제5조는 뇌물임을 알면서도 제3자가 이를 취득한 것은 '몰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뇌물취급을 자금세탁방지법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여 형사기소 등 엄격히 처벌하도록 한 OECD 협약에 비하여 국제적 기준에 미달하는 관대한 처벌규정임.
 -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자금세탁방지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금융기관을 포함한 제3자가 뇌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취급·보관할 수 있고
 - 부정한 거래를 관계당국에 보고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으므로 부패방지법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짐.
- 우리나라는 법에 위반할 경우 관련인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반면 미국은 뇌물제공자를 징역 '또는/그리고' 벌금형에 처하며 법인 등 뇌물교사자가 벌금을 대신하여 지불할 수 없음.
 - 이 밖에도 범인인도를 우리나라 국민이라는 이유로 거부할 경우 국내법에 따라 기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 '소액의 금전 기타 이익'으로 규정된 급행료의 기준이 미국 등과 같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함.

VI. 우리 경제에 대한 시사점

1. 우리 경제가 처한 현황

- 미국·일본·EU를 제외한 다른 국가로 수출되는 우리나라 제품의 총액은 1998년 당시 791억 달러로 주요 선진국 수출(532억 달러)을 상회함.
 - 따라서 부패도가 높은 개도국에 대한 수출을 주로 하는 국내기업에게 부패방지협약이 제약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또한 우리 기업이 관행적인 비리에 익숙한 반면 객관적인 회계기준과 외부감사제도 등의 부패감시체제에 대한 경험은 일천하므로 기존 관행에 따른 영업활동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부패방지협약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음.
- 뿐만 아니라 <표 4>에서 보듯이 대외적으로 우리나라는 부패가 심각한 나라로 인식되어 있고 최근에는 그러한 인식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음.⁶¹⁾
 - 국제투명성사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청렴성은 1998년 당시 85개국 중 43위로 OECD 국가에서 멕시코를 제외하면 가장 부패한 국가로 부각되었으며 우리나라보다 부패한 국가의 대부분은 아프리카와 남미제국임.
 - 한편, 국제투명성사회(TI)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경우 그 수출규모가 수입국가의 부패도와 정의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남.

61) CPI(Corruption Perception Index)는 국제투명성사회(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각종 설문조사들을 기초자료로 사용하여 작성함.

〈표 4〉 한국의 청렴도 지수(CPI)

연 도	지수	순위	분 산
1988~1992	3.5	27	-
1995	5.0	27	1.29
1996	5.0	27	2.30
1997	4.2	34	2.76
1998	4.2	43	1.20

주: 85개국 대상으로 지수는 10점 만점으로 지수가 높을수록 청렴한 국가임. 한편 1998년 분산(variance)은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로서 각종 설문에 나타난 청렴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나타냄.

자료: 국제투명성사회(TI)

- 따라서 TI는 우리나라 등이 수출을 하기 위하여 뇌물을 지급하는 관행이 강하다는 결론을 맺음.⁶²⁾
- 상기 분석의 객관성과 상관없이 현실적으로 국가 신인도는 우리나라 기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우리 기업활동이 국제적으로 중점 감시대상이 되고 장기적으로 신뢰도 하락에 따라 사업수주에 제약을 가함.
- 그러나 우리나라가 처한 근본적인 문제점은 이러한 대외적 이미지보다는 사회 전체가 부패행위에 둔감하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공감대 형성이 아직 부족하다는 사실임.
 - 지난 외환위기에서 보듯이 부패가 만연하면 정책결정의 실기로 경제시스템이 부식되며 이에 따라서 기업활동은 지대추구에 몰입하게 되는 등 시장의 붕괴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 싱가포르가 멕시코 수준으로 부패가 증가하면(CPI 기준) 세율이 약 20% 증가하는

62) Lambsdorff, Johann G, 1998. "First Enquiry into the Bribery Propensity of Leading Exporting Nations,"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 Research*, Vol. 10, No. 1.

효과와 같으며 부패는 다른 요인이 일정할 경우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음.⁶³⁾

- 반면 국제적 환경은 상품과 서비스교역이 자유화되면서 선진국은 경제체제를 비롯한 시스템의 개선을 통하여 전면적인 경쟁체제의 구축에 앞장서고 있음.
 - 상품과 서비스교역이 자유화되면 국가경쟁력은 결국 '체제의 효율성'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음.
 - 반면, 체제의 효율성은 정부를 포함한 사회 각 부문이 시장매커니즘에 의한 자원활용에 동의하는가에 달려 있음.
- 이와 같이 정부운영을 포함한 사회시스템 자체가 물품교역의 이면에서 '소리 없는 경쟁'을 하는 체제내에서, 우리나라는 금융실명제의 완화, 자금세탁방지법과 부패방지법의 제정 실패 등 일련의 제도개혁이 연기되고 있거나 종결되고 있는 현실임.

2. 외부환경과 정책방향

- 국제금융시장의 통합과 WTO 체제의 정착 등을 통하여 경제자원의 흐름이 자유화되면서 우선 국지적 시장의 불안정이 야기하는 '외부효과'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으며 또한 '국가체제의 경쟁력'이 이슈화되고 있음.
 - 경제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IMF를 위시한 국제기구는 금융과 기업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교환 그리고 국제적으로

63) How taxing is corruption on international investors? Shang-Jin Wei, 1997, *NBER Working paper 6030*; 장근호, 「경제성장과 정부운영에 관한 일고: 제도적 효율성을 중심으로」, 한국공공경제학회 제1차 학술대회.

공인된 금융감독 및 회계기준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 OECD는 부패방지협약 관련 논의를 포함한 건전한 정부운영(Good Governance)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임.

- 이러한 논의의 이면에는 ‘공정한 시장체제’를 확립한다는 명목하에 자국의 이익을 증진하려는 선진국의 의도도 있으나 궁극적으로 시장이 통합된 체제내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려면 재화의 교역에 뒷받침되는 제도가 효율적이어야 함.

- 따라서 ‘제도의 국제화’를 이용한 체제개혁으로 국내 이익단체의 압력을 배제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부패방지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도입을 추진하고 연후 정부운영에 있어서 경쟁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우선 OECD가 강조한 바와 같이 기업의 자발적 이행을 위해서는 기업책임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므로,
- IMF와 FATF 그리고 OECD CFA가 추진중인 국제적 금융 및 회계·감사기준과 세무감사기준을 검토하여 국내법에 적용함.
- 특히, 투명한 회계기준은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적 하부구조이며 기업 내부에서 비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기업윤리강령과 같은 기업통제(Corporate Governance)의 구체적인 정비가 필요함.
- 또한 실질적인 금융실명제와 자금세탁방지법을 실시하여 부패방지의 감시수단이 작동할 수 있어야 함.⁶⁴⁾

- 한편, 비리가 발생하였을 때 당사자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패가 상당 부분 불합리한 정부운영에서 파생됨을 고려하면 부패를 사전

64) 전술한대로 FATF는 익명 내지는 가명계좌의 개설을 금지하고 자금세탁방지법을 뇌물행위에 적용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 에 예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최선의 선택임.
- 특히, 공무원 보수체제와 업무책임의 개선과 더불어 공공관리위원회(PUMA)가 고려중인 정부운영의 개선안을 채택함.⁶⁵⁾
 - 이 밖에도 OECD PUMA가 조사중인 체계적인 부패방지조치들에 대한 명목적 채택이 아닌 실질적 도입이 필요함.⁶⁶⁾
 - 즉, ‘공공기관 부패방지를 위한 PUMA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부패방지를 위한 독립적 감독기구를 제외하면 음부즈맨이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준)독립기구 등 제반 조치가 실질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것처럼 제시됨(부록 표 1 참조).
- 마지막으로 EC의 예에서 보듯이 제3의 기관이 매년 각 정부부문별로 비리방지를 위한 대책과 그 성과를 평가하도록 함.⁶⁷⁾

65) Countering Public Sector Corruption: An Overview of Corruption Prevention Measures in OECD Countries, *OECD Public Management Service*, 1999.

66) Improving Ethical Conduct in the Public Service, 1998, Recommendation of the OECD Council 참조.

67) Protection of the Financial Interests of the Communities.

Ⅶ. 결론

- OECD 작업반이 지적한대로 부패방지협약이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후속조치와 이행에 대한 엄정한 감시·감독이 매우 중요함.
 - 우선 IMF와의 공조하에 객관적 회계 및 세무감사제도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마련하고,
 - 이를 바탕으로 자금세탁 및 역외센터에 대한 국제적 감독체계 그리고 세무관련 정보의 국제적 교류가 정착되어야 함.
 - OECD 부패방지 작업반은 이러한 쟁점사항에 관한 검토와 구체적인 하부구조 확립을 위하여 FATF와 TI 등 각종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논의결과를 1999년 5월에 각료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임.
- 작업반은 현재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을 자금세탁법의 목적상 중대한 범죄임을 각료이사회가 천명하도록 잠정 권고한 이외, 기업책임과 관련한 기업법 그리고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및 사범당국간의 공조체계에 대하여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개선안은 아직 제시하지 않음.
 - 따라서 구속력있고 기능적으로 동등한 부패방지협약의 시행은 2000년 후반기부터 시행되는 2단계 평가에서 본격적으로 판정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부패가 상당 경우 불합리한 제도운영의 결과임을 상기하면 비리공직자를 처벌하는 제도보다는 부패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적의 선택임.

- 뇌물의 수요를 통제하기 위하여 보수와 업무 등 건전한 정부운영 (Good Governance)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함께 뇌물교사도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되어야 함.
 - 이 밖에도 비리의 상당 부분이 정당(인)과 관련되어 발생함을 고려하면 정당인에 대한 제재와 자금세탁 관련 금융기밀법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실질적 부패방지가 가능함.
- 부패방지협약이 공정하게 운영된다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틀이 남용될 때 발생할 부작용을 경계하여야 함.
- 국제협상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선진국은 각종 국제협약을 자국에유리하게 일방적으로 해석하고 각종 국제협약의 이행을 촉구하는 경향이 있음.
- 즉, 경제행위와 제도의 변화가 일정 수준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러한 급격한 제도개선은 개발도상국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
- 따라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은 각종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개도국의 제도도입에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고
 - 부패방지협약의 확산을 위하여 OECD협약 가입에 일정한 유예조항을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함.
- 현재 국제금융시장의 통합과 WTO체제의 정착 등을 통하여 무역과 서비스 그리고 투자의 자유화가 이루어지면서 ‘체제의 안정성과 국가경쟁력’이 불가피하게 이슈화되고 있음.
- 특히, 선진국은 OECD와 IMF 등의 국제기구를 앞세워 공정한 시장체제 확립을 통한 ‘시장의 국제화’와 더불어 ‘제도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음.

- 이는 WTO체제 이후 시장의 통합과 국제금융시장의 발달로 인하여 재화의 흐름이 자유화되면서
 - 부정과 비리로 인한 체제의 비효율성이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당사국의 경제체제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 지난 외환위기에서 보듯이 국지적인 경제위기가 세계경제 전반에 심각한 파급효과를 유발한다는 측면에서 체제의 안정을 위한 국제적 공조가 불가피하기 때문임.
- 따라서 OECD 부패방지협약을 필두로 IMF가 추진중인 정보교류와 공인된 금융감독 및 회계기준의 적용 그리고 OECD의 건전한 정부운영 (Good Governance) 등 체제개선에 대한 선진국 관심은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
- 물론 그 이면에는 선진국의 이익이 개제된 것이 사실이나,
 - 자원흐름이 제한이 없는 시대에서는 사회체제가 국가경쟁에 있어서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그러므로 ‘제도의 국제화’ 움직임을 이용하여 국내 이익단체의 압력을 배제하고 신속한 제도개혁을 이룩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의미에서 정부운영에 있어서 보수와 업무 등 행정체제에 대한 개선작업이 선행되어야 함.
- 동시에, 부패방지의 자발적 이행을 위한 회계기준과 독립감사제도 등의 기업통제가 기업법에 반영되어야 하고,
 - 정치비리를 규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금융실명제 및 자금세탁방지법이 시행되어야 함.

참고문헌

- 안종석. 1997.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방지: OECD논의 및 회원국의 관련제도 현황」. 한국조세연구원.
- 장근호. 1997. 「경제성장과 정부운영에 관한 일고: 제도적 효율성을 중심으로」. 한국공공경제학회 제1차 학술대회.
- 전영재 외. 1999. 「부패라운드 출범에 따른 파장」. 삼성경제연구소 인터넷자료 Weekly CEO Information. <http://econdb.seri-samsung.org>.
- Bardhan, Pranab K. 1997. "Corruption and Development: a Review of Issue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XXXV: 1320-1346.
- Eigen, Peter. 1997.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Is the Tide Now Turning." *Transparency International Annual Report 1997*. http://www.transparency.de/introducing_ti/annual_report97.html.
- European Commission. 1998. "Protection of the Communities' Financial Interest: Fight Against Fraud Work Program 1998/1999". Brussel 06/05/1998 COM(98) 278 (final).
- European Union. 1998. "Explanatory Report on the Convention on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Involving Official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or officials of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Text approved by the Council on 3 December 1998)." *Official Journal C 391*, 15/12/1998 p. 0001-0012.
- IMF. 1999. *Experimental Case Studies on Transparency Practices*.
- Lamsdorff, Johann G. 1998. "First Enquiry into the Bribery Propensity of Leading Exporting Nations." *European Journal of Development Research*. Vol. 10. No. 1.

- OECD. 1999. Countering Public Sector Corruption: An Overview of Corruption Prevention Measures in OECD Countries, OECD Public Management Service.
- . 1997.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Text of the Convention.” <http://www.oecd.org/daf/cmisis/bribery/20novle.htm>.
- . 1998. “Draft Report by CIM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f Bribery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and the 1997 Revised Recommendations.” DAFFE/IME(99)12.
- . 1998. “Assistance against Solicitation of Bribes: a Possible Answer to the Problem of Exportation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DAFFE/IME/BR(98)14.
- . 1999. “Five Issues Relating to Corruption.” DAFFE/IME/BR(98)/REV1.
- . 1998. “New OECD Work on Bribery: the Tax Dimensions.” DAFFE/CFA/WP8(98)14.
- . 1998. “Tax Treatment of Bribes in OECD Member Countries.” DAFFE/CFA/WP8/WD(98)14.
- . 1998. “Developing Best Practices in Administering the Non-Tax Deductibility of Bribery to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DAFFE/CFA/WP8(98)12.
- . 1999. “Developing Best Practices in Administering the Non-Tax Deductibility of Bribery to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DAFFE/CFA/WP8(98)12/REV1.
- . 1999. “Annotated Version of the Draft Report on Access to Bank Information for Tax Purposes.” DAFFE/CFA/WP8(97)14/REV5.
- . 1996. “Implementation of the Recommendation on Bribery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OECD Working Paper, No. 34*.

Wei, Shang Jin. 1997. "How Taxing is Corruption on International Investors?" *NBER Working Paper 6030*.

부록 1

공공부문에서의 부패방지 조치(OECD 국가)

	벨기에	스위스	체코	독일	스페인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	멕시코	폴란드	스웨덴
부패방지법 및 제재조치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기타 부패방지 관련규제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의회 및 입법부에 의한 감시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비리조사권 보유기관	0	0	0	0		0	0	0	0	0		0	0	0	
최고재정감사기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옴부즈만*	0			0		0	0	0	0			0	0	0	0
부패를 기소할 수 있는 특별조직					0	0	0			0			0		
인적자원관리 및 통제		0		△	0	0	0	0	0	△	0	0	0	0	0
재정관리 및 통제	0	0	△	△	0	0		0	0	0		0	0	0	0
조직관리정책 및 통제	0	0		△	0	0		0	0		0	0	0	0	0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0	0	0	△	0	0	0	0	0	0		0	0	0	0
공무원에 대한 훈련 및 안내		0		△	0	0	0	0	0	△	0	0	0	0	0

주: 0=존재 △=제안되었거나 고려중

* 벨기에, 프랑스: 중재관(Médiateur), 독일: 국회청원위원회(Parliamentary Committee on Petitions, 한국: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자료: <http://www.oecd.org/puma/focus/compend/snapshot.htm>

부록 2

海外賂物去來防止法

第1條(目的) 이 法은 國際商去來와 관련하여 外國公務員등에게 賂物을 제공하는 행위를 處罰함으로써 건전한 國際商去來秩序 확립에 기여하고 經濟協力開發機構의 國際商去來에 있어서 外國公務員에 대한 賂物提供行爲防止를 위한 協約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外國公務員등의 범위) 이 法에서 “外國公務員등”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

1. 任命職 또는 選出職을 불문하고 外國政府(中央으로부터 地方에 이르는 모든 段階의 政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立法·行政 또는 司法業務에 종사하는 者.
2. 다음 各目の 1에 해당하는 外國의 公共機能遂行者.
가. 外國政府로부터 위임받은 公的 業務를 수행하는 者.
나. 특정한 公的 業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法令에 의하여 設立된 公共團體 또는 公共機關의 業務에 종사하는 者.
다. 外國政府가 納入資本金의 5割을 초과하여 出資하였거나 重要사업의 決定 및 任員의 任免 등 運營全般에 관하여 實質의인 支配力을 행사하고 있는 企業體의 任職員. 다만, 차별적 補助金 기타 特惠를 받지 아니하고 一般 私經濟主體와 동등한 競爭關係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企業體의 경우는 제외한다.
3. 公的 國際機構의 業務를 수행하는 者.

第3條(賂物供與者 등의 刑事責任) ① 國際商去來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은 目的으로 外國公務員등에게 그 職務와 관련하여 賂物을 約束·供與

하거나 供與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이 경우 犯罪行爲로 얻은 이익이 1千萬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 第1項의 경우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外國公務員등이 속한 國家의 法令에 의하여 그 지급이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경우.
2. 日常的·反復的 業務에 종사하는 外國公務員등에게 同人의 正當한 業務遂行을 촉진할 目的으로 少額의 金錢 기타 이익을 約束·供與하거나 供與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③ 第1項의 罪를 범하여 懲役에 處하는 경우에는 그 所定の 罰金을 併科한다.

第4條(法人의 刑事責任) 法人의 代表者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의 業務에 관하여 第3條 第1項의 罪를 범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에 대하여도 10億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이 경우 犯罪行爲로 얻은 이익이 5億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나 監督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5條(沒收) 이 法에 規定된 犯罪行爲에 제공된 賂物로서 犯人(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處罰되는 法人을 포함한다)이 所有하거나 犯人 이외의 者가 情을 알면서 취득한 것은 沒收한다.

附 則

이 法은 經濟協力開發機構의 國際商去來에 있어서 外國公務員에 대한 賂物 提供行爲防止를 위한 協約의 效力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發效되는 날부터 施行한다.

Executive Summary

A Review and Evaluation of the OECD 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 and Subsequent Implementation Measures

Keun-ho Chang

In 1997 December, 34 nations, most of which are the OECD countries, has agreed upon the OECD Convention on anti-corruption involving foreign public officials and, accordingly, Korea has legislated the Foreign Bribery and Trade Prevention Law on last January 4th.

The Convention, above all, requires Each Party to bring a criminal case against any person who intentionally offers or authorizes any undue benefit to a foreign public official for business advantages directly or indirectly and to establish the liability of legal persons including monetary sanctions for the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Also, Each Party must deny the tax deductibility of such bribes and take necessary measures to establish relevant accounting requirements, jurisdiction, and mutual legal assistance including extraditions.

Furthermore, for a full implementation and functional equivalence, the Working Group under the CIME shall monitor and evaluate implementation measures of Each Party and report recommendations on following-up measures to the OECD

General Council. Specifically,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Convention, the Group will first study the extension of the coverage of the Convention into foreign political party and its officials as well as candidates for public office. The Group will also study the issue of making the bribery a predicate offence for money laundering legislation and the role of foreign subsidiaries and off-shore financial centers in bribery. In addition, other OECD committees such as CFA will review bribery solicitation by public officials, corruption between private businesses, the establishment of the OECD tax audit guideline, and automatic information exchanges.

The Convention was initiated by nations such as the United States in an effort to provide a level playing field for their business. However, integrations of commodity and service markets like financial market have made a regional crisis into global one. In turn, these external effects intensified developed countries' effort to achieve a 'globalization of system' through OECD and IMF as well as a 'globalization of market' through WTO.

According to the OECD, the distorting effects of bribery on competitive conditions undermine good governance and economic growth. In particular, limited competition reduces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and spreads out rent seeking behavior which, in the long run, contributes to market breakdown like the recent financial crises. However, rapid system reform will impose a heavy burden on the developing countries because decision-making behavior as well as economic system are dependent upon the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According to the Transparency International, Korea ranks in 43th place among 85 nations with respect to 1998 corruption

level and tends to pay bribes for the acquisition of contracts in international trade. More serious problem for Korea is its insensitiveness toward corruption which led to the stalemate in reforming measures designed to prevent and prosecute bribery, as demonstrated by the recent failure to adopt anti-money laundering law and the relaxation of the law requiring real name in financial transactions.

On the other hand, as good and service market including investment market are integrated globally, the efficiency of a nation's system which works like a sort of infra-structure in the flow of good and services emerged as a major factor in determining economic growth. The system efficiency which includes just government management is, in turn, decided eventually by sound working of system.

Thus, the important task for Korea is to initiate system reform by utilizing international movement toward globalization of economic system. First of all, it needs to bring about good governance by improving the pay system and government function because frauds most likely result from absurd administration. Secondly, in order to fight against political corruption, anti-money laundering law should be legislated and the law requiring real name in financial transactions must be reinforced. Finally, Korea should be ready to adopt internationally accepted financial supervision and accounting regulation that the IMF and OECD are currently developing in order to boost voluntary compliance by business and effective prevention of bribery.

發刊資料 目錄

■ Working Paper(영문)/ 資料論文(국문)

- 90-01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Bodies in the Asia-Pacific: Working Mechanism and Linkages (90. 8) / Chung-Soo Kim
- 90-02 Strategic Partnering Activity by European Firms through the ESPRIT Programme (90. 8) / L.K. Mytelka
- 91-01 Models of Exchange Rate Behavior : Application to the Yen and the Mark (91. 1) / Sung Yeung Kwack
- 91-02 Anti-Dumping Restrictions against Korean Exports : Major Focus on Consumer Electronic Products (91. 5) / Taeho Bark
- 91-03 Implications of Economic Reforms in CEECs for DAEs : with Emphasis on the Korean Case (91. 6) / Yoo Soo Hong
- 91-04 The ANIEs—an Intermediate Absorber of Intraregional exports? (91. 7) / Jang-Hee Yoo
- 91-05 The Uruguay Round Negotiations and the Korean Economy (91. 11) / Taeho Bark
- 92-01 Changing World Trade Environment and New Political Economics (92. 9) / Jang-Hee Yoo
- 93-01 Economic Effects of Import Source Diversification Policy(ISDP) (93. 1) / In-Soo Kang
- 93-02 Korea's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Southeast Asia (93. 3) / Jai-Won Ryou · Byung-Nak Song
- 93-03 German Economy after Unification—Facts, and Implications for Korea(93. 6) / Sung-Hoon Park
- 93-04 A Note on Korea's Anti-Dumping System and Practices (93. 6) / Wook Chae
- 93-05 Structural Changes in Korea's Exports and the Role of the EC Market (93. 10) / Chung Ki Min
- 93-06 Tax Implications of International Capital Mobility (93. 12) / Joo-Sung Jun
- 93-07 Leveraging Technology for Strategic Advantage in the Global Market (93. 12) / Yoo Soo Hong
- 93-08 Changing Patterns of Korea's Trade in Goods and Services (93. 12) / Jin-Soo Yoo

74 OECD 부패방지협약과 후속이행조치에 관한 논의와 평가

- 94-01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for Korea-Russian Economic Cooperation (94.1)/
Chang Jae Lee
- 94-02 Development of Foreign Trad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Russia (94.8)/Je Hoon Park
- 94-03 Technology Transfer: The Korean Experience (94.12)/Yoo Soo Hong
- 95-01 Issues in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in Asian Development Countries (95.12)/
Jae-Jung Kwon
- 96-01 Globalization and Strategic Alliance among Semiconductor Firms in the Asia-Pacific :
A Korean Perspective (96.4)/Wan-Soon Kim
- 96-02 Toward Liberalization of International Direct Investment in Korea: Retrospects and
Prospects (96.4)/Yun-Jong Wang · Jung-Dong Kim
- 96-03 International Trade in Software (96.4)/Suchan Chae
- 96-04 The Emerging WTO and New Trade Issues—Korea's Role and Priorities (96.8)/
Chan-Hyun Sohn
- 96-05 An Economic Assessment of Anti-Dumping Rules—From the Perspective of
Competition Laws and Policy (96.10)/Wook Chae
- 96-06 Cultural Differences in the Crusade Against International Bribery (96.12)/Joongi
Kim · Jong Bum Kim
- 96-07 Competition policies & the Transfer pricing of multinational enterprises (97.4)/
Young-soo Woo
- 97-01 Impa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Liberalization: The Case of Korea (97.8)/
June-Dong Kim
- 97-02 APEC's Eco-Tech: Prospects and Issues (97.12)/Jaebong Ro · Hyungdo Ahn
- 97-03 企業支配構造에 관한 OECD 論議와 우리 經濟에의 示唆點 (97.12)/王允鍾 · 李晟鳳
- 97-04 Economic Evaluation of Three-Stage Approach to APEC's Bogor Goal of Trade
Liberalization (97.12)/Inkyo Cheong
- 97-05 EU의 企業課稅와 韓國企業의 直接投資戰略 (97.12)/李晟鳳
- 97-06 In Search of an Effective Role for ASEM: Combating International Corruption (92.12)/
Jong Bum Kim
- 97-07 Economic Impact of Foreign Debt in Korea (97.12)/Sang-In Hwang
- 97-08 Implications of APEC Trade Liberalization on the OECD Countries: An Empirical
Analysis Based on a CGE Model (97.12)/Seunghye Han · Inkyo Cheong
- 97-09 IMF 救濟金融事例 研究: 멕시코, 泰國, 인도네시아의 事例를 중심으로 (97.12)/金元鎬 外
- 97-10 韓·EU 主要通商懸案과 對應方案 (97.12)/李鍾華

- 97-11 러시아 外國人投資 現況 및 制度的 與件 (97.12)/鄭鎔株
- 98-01 韓·日 主要通商懸案과 對應課題 (98.5)/程勳·李鴻培
- 98-02 Bankruptcy Procedure in Korea: A Perspective (98.7)/Mikyung Yun
- 98-03 美國의 兩者間 投資協定: 韓·美 投資協定の 意義 및 展望 (98.8)/金寬濤
- 98-04 The Rol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s Economic Development: Productivity Effects and Implications for the Currency Crisis (98.9)/June-Dong Kim · Sang-In Hwang
- 98-05 Korea's Trade and Industrial Policies(1948-1998):Why the Era of Active Policy is Over (98.9)/Chan-Hyun Sohn 外
- 98-06 ASEM Investment Promotion Action Plan(IPAP) Revisited: Establishing the Groundwork for Regional Investment Initiative (98.10)/Chong Wha LEE
- 98-07 해외투자사례연구시리즈 ① 외환위기 이후 한국해외현지법인의 구조조정실태와 애로사항: 영국 (98.12)/申東和
- 98-08 해외투자사례연구시리즈 ② 외환위기 이후 한국해외현지법인의 구조조정실태와 애로사항: 인도네시아 (98.12)/金完仲
- 98-09 해외투자사례연구시리즈 ③ 외환위기 이후 한국해외현지법인의 구조조정실태와 애로사항: 미국 (98.12)/朴英鎬
- 98-10 해외투자사례연구시리즈 ④ 외환위기 이후 한국해외현지법인의 구조조정실태와 애로사항: 중국 (98.12)/金琮根
- 98-11 해외투자사례연구시리즈 ⑤ 외환위기 이후 한국해외현지법인의 구조조정실태와 애로사항: 泰國/金耿根
- 98-12 APEC's Ecotech: Linking ODA and TILF (98.12)/Hyundo Ahn · Hongyul Han
- 98-13 경제난 극복의 지름길: 외국인투자/金準東 外
- 98-14 最近 國際金融環境變化와 國際金融市場 動向/王允鍾 外
- 98-15 Technology-Related FDI Climate in Korea/Yoo Soo Hong
- 98-16 構造調整과 國家競爭力/洪裕洙
- 98-17 WTO 무역원활화 논의현황과 정책과제: 통관절차 및 상품의 국경이동을 중심으로/孫讚鉉·任曉成
- 98-18 주요국의 투자자관계 관리사례/申東和
- 98-19 公企業 매각방식의 주요 유형: 해외매각을 中心으로/尹美京·朴英鎬
- 99-01 改革推進 外國事例와 示唆點/金元鎬 外
- 99-02 WTO 뉴라운드의 전망과 대책/蔡旭·徐暢培
- 99-03 Korea-U.S. FTA: Prospects and Analysis/Inkyo Cheong · Yunjong Wang
- 99-04 Korea's FTA Policy Consistent with APEC Goals/Inkyo Cheong

張 槿 鎬

美 University of Maryland 경제학 학사(1983)

美 University of Chicago 경제학 박사(1994)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現, E-mail: chang@kipf.kipf.re.kr)

관세심의위원회 심의위원(現)

관세행정위원회 심의위원(現)

WTO 한국주세 패널 대표(1998)

著書 및 論文

『열린 시대의 관세율정책: 관세율인하예시제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1997)

『반덤핑관세조치의 경제적 효과와 개선방안』(1999)

「경제성장과 정부운영에 관한 일고-제도적 효율성을 중심으로」(1997) 외

자료논문 99-05

OECD 부패방지협약과 후속이행조치에 관한 논의와 평가

1999년 6월 1일 인쇄

1999년 6월 5일 발행

발 행 인 李 景 台

對外經濟政策研究院

발 행 처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4

전화: 3460-1135 FAX: 3460-1133, 1144

인 쇄 비봉출판사 전화: 3142-6555 대표 朴琪鳳

등 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本書 內容의 無斷 轉載・複製를 금함】

ISBN 89-322-4048-5 94320

89-322-4027-2(세트)

값 5,000원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있는 專門家, 企業 및 一般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 및 세미나자료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 원 종 류	배 포 자 료	연 회 비	
		기 관 회 원	개 인 회 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원	20만원
A	무역 투자부문 (계간지 포함)	10만원	8만원
B	구주지역자료 (월간지 포함)	10만원	8만원
C	미주지역자료 (월간지 포함)	10만원	8만원
D	아주지역자료 (월간지 포함)	15만원	12만원
E	계간 대외경제정책연구	2만 5천 원	
F	월간KIEP세계경제	5만원	
G	KIEP주간세계경제분석	5만원(인쇄물)/10만원(전자메일)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를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수시 접수)
 137-747 서초구 염곡동 30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보자료실 편집출판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2) 3460-1179 / FAX : 02) 3460-1144
 E-mail : sklee@kiep.go.kr

• 회원특전

- S기관회원에 대해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週報(인쇄물)를 제공합니다.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가 제공됩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 소장자료를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해당난에 V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기관회원 ☐	S	A	B	C	D	E	F	G
일반회원 ☐	발간물일체	무역·투자	구조경제	미주경제	이주경제	계간지	월간지	주보
교환기관 ☐								
OB ☐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